

大同法 研究

—慶尙道에 實施된 大同法—

金 玉 根*

〈目 次〉	
序 言	1. 概 觀
I. 實施經緯	2. 主要支出項目的 檢討
II. 賦課·徵收	V. 留置米
III. 對日外交費	1. 營·官需
1. 朝鮮時代 對日交隣外交의 實態	2. 儲置米
2. 通交關係 諸經費	3. 倭 供
IV. 上納米의 用途	

序 言

本稿는 筆者가 進行中에 있는 大同法 研究의 一環을 이루는 것이다. 光海君 即位年에 京畿道에 始設된 大同法은 그후에 許多한 迂餘曲折과 試鍊을 겪으면서 漸進的으로 江原道와 兩湖에 실시되었고 肅宗 4年에는 드디어 慶尙道에 그 실시를 보게 되었다.

大同法이 실시된 朝鮮後期에 있어 對日通交는 釜山倭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倭使接待費와 公貿易價 및 通信使의 派遣費 등 廣義의 對日外交費는 年間 8萬餘石(米)에 달했던 것인데 이 對日外交費의 대부분을 倭館所在道인 慶尙道の 田稅와 大同稅로서 充當하였고 이러한 倭供으로 말미암아 慶尙道農民이 입은 弊害는 莫甚한 것이었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位置에 있는 慶尙道에 실시된 大同法을 倭供과 關連하여 賦課·徵收·用途의 側面에서 論究하려고 하며, 이러한 視角에서 本道 및 앞으로 分析할 平安道の 大同法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 對日外交費의 分析을 위해서 많은 紙面을 割愛했음을 밝혀 둔다.

* 釜山水產大學 教授

I. 實施經緯

孝宗 2年 忠淸道 大同法の 復役을 불 때까지 10餘年間の 論爭過程에서 일부 官僚들은 湖西뿐만 아니라 湖南과 嶺南에도 이 法을 實施하자고 주장하였으나 湖西先試論이 優勢하여 實現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 顯宗 3년에 湖南山郡에 大同法이 실시됨을 契機로 하여 이 法은 湖南全域에 擴大實施를 보게 되었고, 이로부터 16년이 經過한 肅宗 4년에 慶尙道에 大同法の 실시를 보게 되었다. 半世紀前에 京畿道에서 시작하여 江原 湖西 湖南의 순서로 漸進的으로 擴大實施되고 있는 大同法은 枝葉的 部分的 弊端은 있었으나 대체로 良好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課稅不公平과 防納 등에 의한 막심한 社會的 弊害를 가져오는 貢納制에 比하여 納稅者인 農民과 課稅主體인 政府의 雙方에 有利한 優越한 制度임이 立證되었다. 이리하여 大同法の 全國的 擴大實施가 하나의 필연적 사실로 발전된 상황아래 肅宗 初期에 慶尙道民들이 스스로 이 法의 실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地主·富農層은 反對策動을 敢行할 수 있는 基盤을 거의 잃게 되었다. 이 결과 嶺南에 있어서는 他道의 大同法 設始때 보는 것과 같은 贊反兩派間의 熾烈한 論爭이 없었던 것이다.

嶺南大同法이 論難없이 조용한 가운데 設始된 點인지 實錄에는 이에 관한 記事를 찾아 볼 수 없고 嶺南廳事例와 承政院日記에 2,3의 記事가 있을 뿐이다. 純祖 末期에 編纂한 것으로 推測되는 嶺南廳事例 序說에는,

肅廟朝三年丁巳 都承旨李元禎 以嶺南民役之重 倍於他道 民願大同 不啻若渴飲飢食 依兩湖例 一體施行大同之意 筵奏 蒙允

이라 하여 肅宗3년에 都承旨 李元禎의 筵奏에 의하여 嶺南에 大同法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說明하고 있으나, 嶺南大同設始事를 具體的으로 論議하게된 契機가 된 것은 同年에 慶尙道民의 大多數가 大同法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실시를 建議한 慶尙監司 李泰淵의 狀啓이다. 이에 관한 文獻의 記事를 살펴 보면 肅宗 3年 8月 23日 玄風縣監 鄭載大가 請對에서 肅宗의 民情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嶺南徭役煩重不聊生 近聞有京大同之舉行 大小人民 皆以爲便 而道臣以待豐定行之意 既已啓聞⁽¹⁾

라고 대답한 것을 볼 때 慶尙監司가 道民의 輿論을 反映하여 적절한 시기에 大同法을 設始할 것을 建議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고, 또 3日 후인 8月 23日 次對에서 大司 李元禎이,

(1) 承政院日記 肅宗 3年 8月 20日

因慶尙監司狀啓 有大同便否 下備局收議之教矣⁽²⁾

이라 한 바와 같이 慶尙監司의 狀啓를 接한 肅宗은 嶺南大同事에 관하여 備局에서 論議하여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王命에 따라 備局에서 討議한 내용을 보면 李元禎은, 臣得見其啓本 則有一二邑 不願大同云者 而臣適見 其所謂不願所居之人 問其便否 則答以民情則皆願 而但守令防塞云……兩湖則既已設行 而獨於嶺南 不爲設行 似爲不可矣⁽³⁾라 하여 監司의 啓本에는 다만 1,2邑에서만 大同法을 不願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不願한다고 하는 1,2邑의 住民에 대하여 自身이 직접 그 便否를 물어 보았더니 실시를 願하고 있으며 다만 守令의 防塞때문이고 실지는 道民이 모두 願하고 있으니 兩湖에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設始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同席했던 官僚들도 모두 民情에 따라 設始하는 것이 可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官僚들이 모두 贊成의 뜻을 表明하자 肅宗은 大同法을 自願하는 邑이 많음으로 設始하되 그동안 節目을 講定하여 明年부터 시행함이 가하다고 하였다.

予見其啓本 則自願之邑甚多 缺自願則 可以允從 而但今年則未知何如也 缺爲便則決定可也 今年雖不設行 預爲定奪 缺與領相同議 講究其節目 待明年設行可也⁽⁴⁾

肅宗 3년에 실시하지 않고 다음해부터 實施키로 하게 된 理由는 同年에 慶尙道 一帶의 農事가 凶作이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備邊司謄錄 肅宗 9年 7月 24日條에,

嶺南大同 始行於戊午年

이라 한 바와 같이 肅宗 4年(戊午年)부터 實施하게 되었다. 그런데 肅宗 4年度부터 實施한다면 그 해 秋等부터 課徵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못하고 肅宗 5年 春等부터 課徵하였다. 그 理由는 肅宗 3년에 政府의 지시에 따라 本道監司 李泰淵이 마련하여 上送한 節目文書를 宣惠廳에서 紛失하고 또 監司가 遞任하는 가운데 時日이 經過되어 不得已 肅宗 5年 春等부터 課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⁵⁾

다음에 肅宗 3년에 設廳한 것으로 믿어지는 嶺南廳機構에 관하여 살펴 보면 <表 1>에서 보듯 都提調는 3公이 例兼하고 提調 3名, 郎廳 1名, 書吏 庫直 각 4名, 使令 6名, 軍士 3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혹은 兼務 또는 專任 혹은 差定된 職員이다.

(2) 上揭書 肅宗 3年 8月 23日

(3) 同 上

(4) 同 上

(5) 嶺南廳事例 序說

〈表 1〉 嶺南廳 職制表

職 名	人 員 數 其 他
都 提 調	3公例兼
提 調	{ 2名別爲差下勾管. 1名 戶判例兼
郎 廳	1名 兼管京畿(康熙己未啓下勾管)
書 吏	4名 (設始初 常平廳書吏兼察)
庫 直	4名 (")
使 令	6名 (")
計 士	1名
軍 士	3名 兵曹差定

出典：嶺南廳事例

II. 賦課・徵收

慶尙道에 大同法을 設始한 初期에는 每結에 米 13斗(春捧 6斗 秋捧 7斗)씩을 賦課하였으나 肅宗 9년에 嶺南 閔維重의 建議에 따라 1斗를 減하여 京畿 및 兩湖와 같이 12斗로 定額하였다.

(肅宗)九年 嶺南 閔維重奏曰 大同之法 本爲均役便民 故湖南減一斗 湖西加二斗 皆十斗爲準 嶺南收十三斗 實有乖於設法之本意……特軫貢賦偏重之弊 所減一斗 以寬民力 上從之⁽⁶⁾

그런데 嶺南沿海 22邑 즉 晉州 密陽 金海 昌寧 昌原 咸安 固城 宜寧 玄風 靈山 泗川 昆陽 丹城 河東 梁山 漆原 巨濟 嶺海 熊川 南海 蔚山 機張은 米를 徵收하고 豐基 등 山郡 45邑은⁽⁷⁾ 錢과 木綿을 分半 徵收하고, 安義 居昌 咸陽 山淸 등 4邑은 初期에 錢과 麻布를 分半徵收하고 三嘉 陝川은 錢과 木綿을 分半徵收하였으나, 英祖 4년에 收稅規定을 變更하여 麻農이 발달한 前記 4邑에는 全額을 麻布로 徵收하다가 正祖 16년에 民願에 따라 全額 金納토록 하였고, 三嘉 陝川은 納稅者의 希望에 따라 麻布 또는 錢으로 納付케 하였다. 그리고 大同收稅物(木·布)의 作米·換價率은 綿布 1疋(5升 35尺)에 米 7斗로 하고 麻布도 이에 準하였다. 大同麻布의 作錢은 田稅에 準하였는데⁽⁸⁾ 續大典 戶典 收稅條에 田稅 木·布 1疋에 2兩씩, 稅米 1石에 5兩씩을 規定하고 있다.

(6) 文獻備考 田賦考 13

(7) 嶺南山郡 45邑은 다음과 같다.

豐基 榮州 禮泉 興海 永川 淸道 慶山 義城 盈德 龍宮 奉化 眞寶 延日 禮安 軍威
比安 義興 新寧 河陽 慈仁 淸河 彥陽 尙州 陝川 金山 聞慶 咸昌 開寧 知禮 三嘉
順興 英陽 安東 青松 寧海 長鬐 慶州 東來 大邱 星州 漆谷 仁同 善山 草溪 高靈

(8) 續大典 戶典 徭賦條

大同稅를 賦課할 對象地는 他道와 같이 免賦稅地 出稅免賦地 및 給復田을 제외한 모든 田畝 인데, 免稅地인 衙祿·公須田 學位田 賜額書院田 新羅崇德殿位田 敬順王影堂廟位田 崇烈寺位田에는 大同稅을 賦課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本道の 給復對象은 各邑人吏 驛吏·卒 各鎮召募軍 津夫 席匠 硯石匠 內官 內·外匡女 弓矢人 忠孝節義人과 崇德殿 治隱祠 表忠祠 海印寺 松林寺 등인데 이들 개인과 祠·寺등에 대한 總給復結數가 15,578結에 달하고 있다.⁽⁹⁾ 이 가운데 대부분이 法典에 의거한 給復이기 때문에 他道와 같음으로 說明을 省略하고 本道에 특이한 것만을 살펴 본다.

① 驛吏 驛卒給復

肅宗 4년에 講定한 嶺南大同事目에는 慶尙道에 驛田이 가장 많아 12,290結에 달하기 때문에 驛田 1結에 2斗씩 收米하는 規定을 設定하였으나 同王 5年 8월에 吏判 李元禎의 建議에 따라 2斗收米規定을 撤廢하고 他道와 같이 大同稅(13斗)全額을 免除하였다.⁽¹⁰⁾ 그리고 驛吏·卒에 대하여 逐名給復(個別的 給復)을 하지않고 驛을 大中小路로 分等하여 配屬한 驛吏·卒에 대해서 1人當 2給씩 驛單位로 給復하고 있는데 純祖末期에 總給復結數가 8,278結 39負 5束으로 設始 당시에 比하여 約 4,000結 減少되고 있다. 또 한가지 留意할 것은 景宗 元년에 役重한 京畿 6驛의 給復結數가 너무 적다는 理由로 3嶺과 江原道の 驛復가운데 每 1結에 3負씩을 除出하여 畿驛賞牌價에 添補토록 하였다. 이 결과 嶺南各邑에서도 總額 米 59石 5升, 木 5同 44疋을 嶺南廳에 바치고 거기서 京畿監營에 支給해 왔는데 英祖 19년에 嶺南 各邑에서 畿營에 直納토록 規定을 바꾸었다.

② 召募鎮 募軍給復

金海의 熊川에 속한 晴川鎮과 固城에 속한 南村鎮 등 각 召募鎮 募軍 560名에 每人當 40負씩 給復하고 있다. 召募鎮 募軍의 性格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알 수 없으나 推測컨대 地方軍의 하나로 給保로 支給받지 못한 軍兵인 것으로 믿어진다.

③ 席匠·硯石匠 給復

安東等地에서 進上席子를 製造하는 席匠과 硯石匠에 給復하고 있는데 給復方法은 人員數에 의하지 않고 各邑에서 措備하는 席子의 數量을 基準으로 하여 邑單位로 給復하고 있는데 各邑에서 匠人에게 給復함에 있어서도 亦是 個人別 席子措備量에 따라 支給한 것으

(9) 嶺南廳事例 復戶條

(10) 上年嶺南大同事目磨鍊時 本道驛田最多 若依他道給復 則慮有結數減縮之患 以一結二斗收米磨鍊啓下矣 驛吏卒田畝 一萬二千二百九十結所收之米 不過一千六百餘石而已 得之甚無關重 而且聞今年本道農事 以優於前歲 雖依他道全減 似無收米不足之患 自今以後 驛吏卒二斗收米 依兩湖例 減除何如 上曰 依爲之 (承政院日記 肅宗 5年 8月 13日)

로 믿어지며, 邑別 給復結數는 <表 2>와 같다.

<表 2> 邑別 席匠·硯石匠 給復量

官 名	工匠職種	給 復 結 數
安 東	席 匠	185結
義 城	〃	145
禮 泉	〃	58
永 川	〃	88
榮 州	〃	58結 30貧 6束
龍 宮	〃	68結
豐 基	〃	61結 84貧 4束
順 興	〃	26結 85負
安 東	硯 石 匠	3結

出典：嶺南廳事例 復戶條

④ 其 他

이밖에 慶州의 新羅始祖 墓所에 있는 崇德殿의 位田 12結, 善山에 있는 治隱祠位田 5結, 密陽 表忠祠位田 5結, 陝川 海印寺位田 7結 54負, 漆谷 松林寺位田 30 結에 각각 大同을 免除(給復)하고 있다.

大略 이상과 같은 賦課方法에 따른 本道의 大同稅 賦課內譯을 살펴 보면 英祖45년에 있어서 元田 204,941結에서 各樣 復戶田 15,569結을 제외한 大同收租結이 189,372結이고 課稅總額이 151,498石이다.⁽¹¹⁾ 한편 純祖24年の 實績을 보면 本道의 元田 202,220結에서 各樣 復戶田 15,515結을 差引한 大同收租結이 186,695結이고 賦課額이 149,356石이다.⁽¹²⁾ 이와같이 嶺南의 大同收租結은 約 18,9萬結이고 收租額은 約 15萬石으로 全羅道와 거의 같은 규모이다.

山郡의 收稅物인 木綿과 麻布는 陸運으로 上納하고 大同米는 田稅 등 餘他の 公穀과 함께 海路로 輸運·上納하였다. 嶺南公穀의 漕運關係에 관하여 살펴보면 平安·咸鏡 兩道の 稅穀은 각각 本道에 留置하며 軍需를 비롯한 公需에 사용하였으나 慶尙道는 이와 달리 倭供 倭料에 所要되는 部分을 제외한 모든 公穀을 輸京케 하였으므로 路程이 먼 관계로 그 弊端이 막심하였다. 鮮初에는 慶尙稅穀을 海路로 漕運하였으나 破船事故가 잦아 世宗 10年代에 本道 各官의 稅穀을 水路 또는 陸路로 尙州로 輸運하며 거기서 忠州 可興倉으로 陸運하여 水路로 京倉으로 輸運했던 것이다. 그런데 大同法 設始後 沿海 各邑에서 地土 船을 京江船人에게 造給하여 그들이 漕運時에 下來하여 輸運토록 하였는데 이 京江船人들

(11) 文獻備考 田賦考 13

(12) 前揭事例 捧上條

이 兩湖의 公穀輸運을 끝낸 뒤에 내려와서 載船하며, 敗沒事故를 자주 일으켜 10年 동안에만 7萬餘石을 水沈게 하고 貧民들에게 拯劣米(水沈米)를 分給하며 稅穀과 船價를 再徵하는 弊害를 끼치는 등 그 弊癘이 막심하였다.

當初沿海各邑 地土船造給京江船人 稅運時 下去載來矣 船漢輩奸弊百出 先運兩湖大同受食船價 最後下去本邑 故每致過時臭載 相續十年內 公穀敗沒 多至七萬餘石 數十邑窮民 拯劣再徵 船收斂 實爲難支之病癘⁽¹³⁾

이와 같은 京江船人의 請負輸運에 의한 弊害를 除去하기 위해서 英祖 37年에 慶尙監司의 狀請에 따라 晉州 駕山倉(右倉)과 昌原 馬山倉(左倉)을 설립하고, 同王 41年에 密陽 三浪倉(後倉)을 設立하였다. 이리하여 各邑所屬의 地土船을 漕船으로 反作하여 3倉에 所定의 漕船과 漕卒을 배치해 두고 各邑船價를 漕倉에 除留하여 經費에 사용토록 하고, 한편 除留餘米는 年利 1割로 貨出 取息하여 漕船의 改槩·改造費 등에 사용토록 하였다. 3漕倉의 所屬邑과 漕船 및 沙格(船員) 配屬內譯은 <表 3>과 같다.

<表 3> 嶺南3倉所屬邑·漕船·船員數

漕倉名	所屬邑	漕船數	船員 및 保人數
昌原 馬山倉	昌原 咸安 漆原 熊川 鎭海 宜寧 巨濟 固城東南(8邑)	20隻 餘船 2隻	沙格 320名 船直 40〃 漕保 640〃
晉州 駕山倉	晉州 昆陽 丹城 泗川 固城西北 南海 河東	20隻 餘船2隻	沙格 320名 船直 40〃 漕保 640〃
密陽 三浪倉	密陽 靈山 昌寧 玄風 金海 梁山	15隻 餘船1隻	沙格 240名 船直 30〃 漕保 480〃

註 每船 沙工 1名 格軍 15名 船直 2名 漕保 32名

出典：嶺南廳事例 漕轉條

漕保는 沙格에 支給한 保人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餘他の 身役(良役)이 免除되고 復戶가 支給되었다. 3倉所在邑의 守令은 都差使員을 任命하여 徵稅(監捧)와 造船等事를 담당하였고 漕倉 부근의 水軍 鎭邊將은 麾下軍士 가운데 漕船領運官을 差出하였는데 龜山僉使는 晉州 駕山倉, 赤梁僉使는 昌原 馬山倉, 齊浦萬戶는 密陽 三浪倉에 각각 領運差員을 差出하였고 이들은 都差員과 共同立會하여 公穀을 監捧한 다음 各邑의 領運 兼 捧納官인 監官과 色吏와 함께 乘船 領運에 臨하였다.

慶尙道는 京倉과의 距離가 먼 까닭에 실로 막대한 輸送費가 소요되었는데, 가령 河東

(13) 上揭書 漕運條

府의 경우 大同米 1,364石에 대한 漕運船價가 約 4分の 1에 相當하는 318石 4斗에 달하고 있다. (14)

嶺南廳事例에 의하면 本道 大同米의 上納에 즈음하여 京倉에서 加徵하는 附加稅로서 人情雜費 剩米 色米 등이 있다.

① 人 情

人情은 嶺南廳에 종사하는 書吏 庫直 使令 守直軍士 등 下級職員들에 대한 報酬이며 上納時에 人情條로 大同米 每千石當 30石 3斗씩 加徵해 오다가 英祖 37年 嶺南의 左右倉 설립후에 千石마다 120石씩 增額하여 그 가운데 60石은 本廳雜費, 30石은 京倉員役에 대한 人情費, 30石은 補縮條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② 剩 米

從前에 京倉上納時에 落庭米라는 名目으로 每斛에 3,4斗씩 濫徵하였기 때문에 船人들의 고통이 클 뿐 아니라 上納米의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設倉後 이러한 不法濫徵을 막기 위하여 剩米라 改稱하고 上納米 千石마다 20石(1石當 3升)을 加納토록 하였다.

曾前捧上時 有落庭名色 每斛落庭 少不下三四斗 船人不勝支堪 每以此稱寃 漕倉設立之時 名以剩米上納 每石3升式 計數作石納上事 定式事例(15)

③ 色 米

大同米 上納時에 每千石當 色米 3石 5升씩 收納하여 色主人(看色主人) 役價를 控除한 후 殘餘額을 3等分하여 3分の 1은 庫直, 3分の 1은 色駝와 兩裝直에게 支給하였다. 그러나 뒤에 編纂된 것으로 보이는 河東府 丁丑條 稅大同總數成冊單에 의하면 本府 大同米 1,364石에 대한 色落米가 136石 6斗로 上納米의 1割을 차지하는 巨額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京倉徵稅官員들이 規程을 준수하지 않고 不法濫徵을 恣行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그런데 嶺南廳事例에 의하면 各漕倉에서 農民들로 부터 徵稅하는 大同附加稅로는 補縮條로 石마다 加升 3升, 斛上 3升, 人情 6升, 色米 3升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실지에 있어서 規外 濫捧의 弊端이 많았다.

III. 對日外交費

1. 朝鮮時代 對日交隣外交의 實態

1) 朝鮮前期의 概觀

本稿에서 主題에서 離脫된 느낌이 있는 對日外交關係費를 論究하는 이유는 朝鮮後期の

(14) 河東府 丁丑條 稅大同總數成冊單

(15) 前揭事例 各項式例條

大同法時代に 倭使關係 所要經費의 많은 부분을 慶尙道와 平安道の 大同稅에서 지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輪廓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朝鮮王朝의 對日外交關係費를 分析하려면 먼저 兩國間的 通交關係에 대한 概觀이 있어야 한다. 朝鮮時代는 日本의 室町 戰國 織豐 德川 및 明治時代에 해당하며 이러한 歷代政權에 대한 朝鮮의 對日政策의 基本路線은 交隣政策이었다. 즉 交隣政策에 따라 鮮初로 부터 日本에서 國王使(幕府의 使節) 諸巨酋使(畠山 細川 左武衛 京極 山名 大內 小二의 使客)와 諸酋使(群小領主의 使客), 對馬島主使의 使客과 受職 및 受圖人 등의 渡來가 빈번하였다.⁽¹⁶⁾ 國王使 이하 各處의 倭使는 倭船을 타고 渡來하였는데 浦所를 통하여 들어오는 倭船은 대개는 送使와 貿易의 임무를 겸하였다. 室町幕府의 第3代 將軍때 부터 渡來하기 시작한 國王使는 正船 이외에 3隻까지의 副船을 隨伴하였고 巨酋使는 正船 이외에 副船 1隻, 나머지는 1隻만 허용하였는데 對馬島主에 대해서는 한 때 歲遣船 50隻과 特送船數隻의 派遣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日本과는 通交는 太宗 7年 浦所開設 이후 己亥東征 3浦倭亂 蛇梁鎮倭變 壬辰亂 등으로 斷絶과 復交를 거듭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朝鮮王朝의 建國과 더불어 倭寇禁壓이 중요한 課題로 등장하였는데, 日本에 使節을 派遣하여 禁寇를 要請하는 한편 宥和政策을 써서 倭寇의 감소를 도모하였다. 對日宥和政策이 어느 정도 奏効하여 倭寇가 감소되었으나 그 반면에 通商과 捕漁를 위하여 渡來하는 倭人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亂動作弊가 滋甚하였기 때문에 이를 統制하기 위해서 太宗 7年에 富山浦와 乃而浦(薺浦), 同王 18年에 鹽浦와 加背梁(固城郡)의 4浦를 開港하여 倭船의 到泊, 貿易 接待 및 恒居倭의 居住地로 지정하고 그들의 恣意的 활동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4浦를 開港하고 恒倭居住까지 허용하는 厚待에도 불구하고 倭寇는 根絶되지 않고 倭人들의 行悖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世宗은 원년에 對馬島征伐(己亥東征)을 斷行하고 浦所를 廢鎖하였다. 世宗 4年 9月에 對馬島主와 그 母가 使節을 派遣하며 土產物을 進獻하고 歸順을 告하자 다시 懷柔策으로 轉換하며⁽¹⁷⁾ 同王 5年 4月에 富山浦와 乃而浦, 同王 8년에는 鹽浦의 三浦를 開港하였다.

三浦開港 후 殺到하는 倭船에 대한 支待의 弊端을 덜기 위하여 世宗 25年에 對馬島主와 의 사이에 對馬島에서 朝鮮에 派遣하는 歲遣船(送使 및 貿易船)의 數를 年間 50隻으로 制

(16) 海東諸國紀 朝聘應接紀 參照

朝鮮前期에 日本各處의 諸酋가운데 1년에 歲遣船 1,2隻을 派遣하는 者가 57名이었고 餘他의 諸酋는 有事時에만 간혹 派遣하였다(海東諸國紀 朝聘應接紀)

(17) 對馬島 守護 宗彥六及其母 遣使獻土宜 參贊官許稠啓 宜厚待其使 優其答賜 從之(世宗實錄 卷17 4年 9月 丙寅)

限하고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약간의 數外 特送船을 派遣하되 三浦에 分泊토록 하고, 朝鮮에서 島主에게 매년 歲賜米豆 200石을 賜給한다고 規定한 癸亥約條를 맺었다.⁽¹⁸⁾

三浦를 중심으로 兩國間的 通交가 展開되는 가운데 中宗 4年 4月 齊浦의 恒居倭酋가 對馬島主의 特送人 貞盛를 主將으로 삼아 倭軍 4,500名을 거느리고 齊浦와 熊川城을 공격하고 官吏를 射殺하며 民家를 불태우는 行悖를 부렸다.⁽¹⁹⁾ 三浦倭亂으로 한동안 倭館이 閉鎖되었는데 中宗 7年에 對馬島主의 여러 차례에 걸친 講和要請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壬申約條를 맺고 通交가 再開되었다. ① 三浦恒居의 不許 ② 島主 歲遣船 半減(25隻) ③ 島主의 子·代官·受職·圖書人에 대한 歲賜米太 및 歲遣船 不許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한편 歲遣船 25隻, 가운데 大船을 9隻船員 各 40名, 中船을 8隻, 每隻 船員 30名, 小船 8隻, 每隻의 船員 20名으로 入送船隻의 分等·定限과 아울러 船員數를 한정하였다.⁽²⁰⁾ 그 후 中宗 18年 9月에 島主의 歲遣船을 30隻으로 증가 시켰다.

倭館 周邊의 密去來와 倭人의 行悖 및 全羅道 沿岸地域에 대한 빈번한 倭寇의 侵犯에도 불구하고 歲遣船을 增額을 비롯한 懷柔·厚待政策에도 불구하고 倭人들은 또 中宗 39年에 統營郡 蛇梁鎭에서 變亂을 일으켰다. 즉 中宗 39年 4月 12日 새벽에 倭船 20餘隻이 蛇梁鎭江口에 侵入하며 萬戶 柳澤과 接戰하였다.⁽²¹⁾ 이 蛇梁鎭 變亂 후 朝鮮에서는 國王使와 일부 제한된 送使 이외는 日本과의 通交를 斷絶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對馬島主의 執拗한 復交要請으로 朝鮮政府는 論難끝에 그들의 情狀을 參酌하고 交隣의 義를 지키기 위하여 復交를 許諾하였다.

對馬島許和事 朝廷會議 可否相半 其曰 不可和者 固當臣等更思 日本之來請 已至再矣 使者之稱 亦懇切 今可和者 但前定約條 可以更立者多 今爲嚴峻改定 若不欲遵行 則不和亦當……答曰 對馬島事 其曰 不許者是矣 然日本既爲屢請 辭意懇切 而今若不許 則有於交隣之義 嚴立約條二月二十三日 許和爲便⁽²²⁾

이때에 맺은 이른바 丁未約條의 主要內容은 ① 歲遣船을 25隻으로 減額하고 ② 50年前의 受圖·受職人에 대해서 壬申約條에 따라 接待를 不許하며 ③ 船舶代物의 支給을 中止하

(18) 度支志 第7册 卷16

(19) 中宗實錄 卷11, 5年 4月 癸巳條 參照

(20) 接待節目曰 三浦勿許居 島主歲遣船 五十隻 今減其半 歲賜米太二百石 今減其半 勿遣特送 如有所言事 因歲遣船來告 島主子及代官 受職圖書人等賜米太 歲遣船併除 非島主所遣 而加德島近處來泊船 並以賊倭論斷 深處倭或受職 或受圖書來通者 其歲月久近 功勞緊歇量減 其許通入內 受圖者改給圖書(中宗實錄 卷16, 7年 8月 壬戌)

度支志 第7册 卷16 參照

(21) 中宗實錄 卷103, 39年 4月 乙酉條 參照

(22) 明宗實錄 卷4, 2年 2月 乙未

고, ④ 潛商을 禁止하기 위하여 倭人의 箱外出入을 統制하는 諸船規定을 설정하였고, ⑤ 風浪을 빙자하여 加德島 以西에 來泊하는 倭船을 倭賊으로 看做하며 處罰하는 規定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規定은 富山浦만을 浦所로서 入泊을 許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數言하면 壬申約條 후 齊浦 1 港이었던 것을 中宗 16年부터 富山浦를 더하며 2浦分泊制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齊浦는 前洋海中에 섬이 많아서 朝貢을 빙자한 倭船이 여러 섬에 隱泊하여 있다가 侵奪·作亂하였기 때문에⁽²³⁾ 倭船의 齊浦入泊을 禁하고 前洋에 隱泊할 섬이 없는 富山浦만을 開港하게 되었다.

이상 살펴온 바와 같이 倭寇의 侵犯을 막기 위하여 鮮初 以來로 막대한 經濟的 犧牲을 치르면서(後述) 懷柔와 厚待를 爲主로 하는 交隣政策을 推進해 왔으나 倭寇의 侵犯은 根絶되지 않고 濟州島를 비롯한 南海諸島 및 全羅道 沿岸에 대한 倭寇의 跳梁이 계속되던 가운데 드디어 1592年 壬辰亂이 勃發하며 兩國關係는 約 15年동안 斷切되는 것이었다.

2) 壬辰亂이후의 實態

7年間の 倭亂이 끝난 후 朝日關係는 斷絶狀態에 있다가 宣祖 36年(1603年)에 德川家康가 關白이 되어 江戸에 幕府를 樹立하고 通商의 利益을 얻을 목적으로 朝鮮과의 國交再開를 위한 加一層의 노력을 傾注하였다. 朝鮮政府는 日本의 끈덕진 修好懇請을 받아들여 宣祖 40年에 僉知 呂祐吉을 正使로 하는 回答使 1行 270名을 日本으로 派遣함으로써 國交가 回復되었는데 이로부터 2年 후 光海君 元년에 己酉約條를 締結함으로써 兩國關係는 正常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壬亂이후 朝日關係는 이 己酉約條를 基本으로 하여 展開되어 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⁴⁾ ① 日本使節의 留館日限 定限 ② 島主에 대한 歲賜米豆의 定額(100石) ③ 島主에 대해서 歲遣船 17隻, 特送船 3隻 合計 20隻의 派送만 認

(23) 明宗實錄 卷34, 22年 5月 庚午

(24) 一. 留限日限 島主特送一百十日 歲遣諸船八十五日 漂差倭與各項別差倭五十五日

一. 島主處 歲賜米豆 共一百石

一. 館待有三例 國王使爲一例 島主特送爲一例 對馬島受職爲一例

一. 國王使出來時 只許上副船

一. 島主歲遣船 減定十七隻 及特送船三隻 合二十隻 而此外如有別遣事 則歲遣船順付

一. 受職人 歲一來朝 不得遣人

一. 平時受職人 免罪爲幸 今不舉論

一. 船有三等 二十五尺以下爲小船 船夫二十名 二十九尺爲中船 船夫三十名 二十八尺至三十尺爲大船 船夫四十名 丈量船體 又點船夫之數 船夫雖多 不得過定額 若否則以點數給糧

一. 凡所遣船 皆受島主文引之後乃來

一. 島主處 依前例圖書成給 着見樣於紙 藏禮曹及校書館 又置釜山浦 每書契來憑考 驗其眞僞 違格及無符驗船 還入送

一. 無文引者 以賊論斷

一. 過海糧 馬島人 給五日糧 島主特送人 加給五日糧 國王使二十日糧

一. 他宗事 一依前例

(度友志 第八册 卷16, 約條條: 增正交隣志 卷4, 約條條)

定하고, 이밖에 別途로 보낼 일이 있으면 歲遣船 順付하며 ④ 受職人에 대한 1回의 來朝 許容 ⑤ 船體의 分等(大中小) 規準 및 各船에 대한 船員數의 定限 ⑥ 各處送使船에 대한 過海浪의 支給日限 規定 등이 主要骨子로 되어 있다.

己酉約條 후 送使와 交易의 임무를 띠고 渡來한 倭船의 數가 늘어 갔는데 이를 매년 定期的으로 왕래하는 年來入送船과 非定期的으로 왕래하는 差倭(船)가 있다. 年例의으로 渡來하는 送使·貿易船을 歲遣船(廣義)이라고 하는데, 國王送使船 對馬島主의 歲遣船 및 特送船 受圖人船과 受職人船이 있다.

(1) 國王送使船

己酉約條 이후의 國王送使船이라 함은 德川幕府의 關白의 送使船을 말하는 것인데 그 數를 上船과 副船 2隻으로 한정하고 上京人員數도 從前에는 25人으로 제한하였다. 뒤에 國王이 送使하는 예가 없어지고 有事時에 對馬島主가 關白의 뜻을 전달하는 大差倭라는 것을 派遣하게 되었다.

出來時 只許上副船 後無國王送使之例 有事時 馬島倭 以關白意 定送大差倭⁽²⁵⁾

(2) 對馬島主의 年例送使船

對馬島主가 送使및 交易을 위하여 매년 派送하는 年來送使船에는 己酉約條에 따른 歲遣船 17隻과 特送船 3隻 모두 20隻인데 이 正船 이외에 副船 水木船 假還再渡船 등이 添加되므로 總船隻數는 正船의 약 배에 달한다. 己酉約條에 따른 島主의 年例送使船의 內譯은 <表 4>와 같다.

<表 4> 年例送使船 內譯(島主)

大 船	1特送 2特送 3特送船 歲遣 第1船 第2船 第3船
中 船	歲遣 第4船 第5船 第6船 第7船 第8船 第9船 第10船
小 船	歲遣 第11船 第12船 第13船 第14船 第15船 第16船 第17船

出典：增正交隣志 卷1 接待對馬島人 新正事例條

船體를 大中小로 分等하고 大船 6隻, 中船 7隻, 小船 7隻으로 定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음 <表 5>에서 보듯이 船體에 따라 船員數(格倭)에 차이를 두며 入國倭人數를 한정하여 糧米를 비롯한 支持費의 支出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年例送使船의 빈번한 出來는 朝鮮政府로 하여금 막대한 經費支出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므로 仁祖 13年에 己酉約條의 1部를 修正하여 兼帶制를 실시하였다. 즉 島主의 1特送使가 2特送 3特送使를 겸하고 歲遣 第4船送使가 第5船 이하 第17船送使를 겸하게 하였다.

(25) 通文館志 卷5, 交隣 上

이 兼帶制의 실시로 送使船이 종전의 20隻에서 5隻으로 줄었으나 실지 渡來船은 별로 감소된 것이 없고 正官 侍奉 進上 押物 등 員役의 數가 그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茶禮・宴享費는 減縮되었으나 船員의 糧米와 禮單費 公貿易費等 餘他的 經費는 감소되지 않았다.

(a) 二特送使 三特送使 在前凡事 并依一特送 崇禎乙亥(仁祖 13年) 兩船兼於一特送之後 船隻 則雖依前往來 而其正官以下員役茶禮宴享 永爲 蠲除……⁽²⁶⁾

(b) 歲遣第四送使船……自此至第十七船 凡十三隻書契 別幅 並爲 賚來 回答並以受去 而本船則追後往來

(c)……自兼帶員役以後 茶禮宴享 則永爲蠲除進上 公貿等價木 及求請等物 依前式計給於代官倭處……第四船至此格倭 各三十名⁽²⁷⁾

위의 史料에서 보듯이 兼帶制 이후 正官 등 使節의 數만 줄었고 渡來船舶數와 格倭 進上回禮 求請 公貿價 등은 從前과 같았다. 여기서 減額된 送使船에 대하여 賜給하는 上記의 各項 物資를 代官倭에 支給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仁祖 13년에 對馬島主가 24名(뒤에 10名)의 代官倭를 倭館에 派遣하여 公私買賣를 專管토록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3) 受圖書人 送使船

이것은 朝鮮政府로 부터 圖書(證印)를 받은 倭人 年 1回 派送하는 送使船인데 壬辰亂前에 15名이 圖書를 받았으나, 己酉約條 후 副特送使船・萬松院・流芳院・以酌菴・平彦三・平義眞의 送使船이 있었다.

① 副特送使船

원래 受職倭人인 平景直이 受職人의 예에 따라 年 1回씩 來朝하였으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光海君 3년에 圖書를 支給하였기 때문에 受圖書人 送使船으로 바뀌지게 되었다.

② 萬松院 送使船

光海君 14년에 對馬島主가 來朝하여 己酉約條의 締結에 功을 세운 前島主 宗義知가 죽은 후 對馬島 鍾碧山에 院堂을 건립하여 萬松院이라 稱하고 朝鮮을 위하여 誠心으로 香火를 받든다고 말하면서 歲遣船의 派送을 요청하므로 이를 허락한 데서부터 생기게 된 것이다.

始自天啓壬戌 出來島主 平義智 有功於約條時 義智死後 設院堂於馬島鍾碧山 號萬松院 以爲本朝誠心香火爲言 仍請船隻 故朝廷許之⁽²⁸⁾

(26) 通文館志 卷5, 交隣上

(27) 同 上

(28) 同 上

③ 流芳院 送使船

己酉約條時에 功勞가 많은 柳川調信이 죽은 후 그의 아들 智永이 流芳院이라는 祠堂을 建立하고, 그 祭祀費用을 補充한다고 하면서 圖書支給을 要請해왔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따라 流芳院이라는 送使船이 생기게 된 것이다.

④ 以酌菴 送使船

역시 己酉約條를 締結할 때 日本側 代表로 활약한 玄蘇가 光海君 3年에 對馬島의 踏驢山에 以酌菴이라는 암자를 설립하였는데 玄蘇가 죽은 후 以酌菴이라는 圖書를 支給받아 送使船을 보내게 되었다.

萬曆辛亥 玄蘇於府東踏驢山結菴 名以酌 玄蘇死後 受圖書送使⁽²⁹⁾

⑤ 平彦三 送使船

彦三은 島主 義成의 兒名인데 光海君 3年에 그의 父 宗義智가 島主로 있을 때 지난 날 宗熊滿의 예에 따라 圖書發給을 간청하였으므로 平彦三의 이름으로 支給하였는데 光海君 7年에 島主가 된 후에도 返納하지 않고 있다가 孝宗 8年에 그가 죽은 후 圖書를 회수하고 送使船을 罷하였다.

彦三即島主義彦之小字 萬曆辛亥 其父義智爲島主時 攀舊時 宗熊滿之例 請受圖書 朝廷以爲義智 草心効忠 賞宜及嗣許之 乙卯義成代爲島主 而不肯還納……順治丁酉 義成死後 始收之 罷其送使⁽³⁰⁾

⑥ 平義眞 送使船

義眞은 島主 義成의 아들의 兒名인데 彦三의 前例에 따라 平義眞의 이름으로 圖書를 送使船의 派遣에 허락하였는데 肅宗 28年에 義眞이 죽은 후 圖書를 回收하고 送使를 罷하였다.

(4) 受職人船(中絶 5船)

朝鮮政府로 부터 官職을 받은 倭人이 年例의으로 타고 오는 倭船을 受職人船이라 한다. 壬亂前에 受職倭人의 數는 26名이었는데 己酉約條 때 亂前受職者의 접대를 不許하기로 하였다. 壬亂 후의 受職人으로는 藤永正 世伊所 馬勘七 平信時 平義智 등 5名이며 이들은 壬亂 후 功勞가 있다고 認定받아 上護軍 副護軍의 武官職을 받았는데⁽³¹⁾ 1年에 한번씩 本人이 직접 來朝해야 하며 遣人을 인정하지 않았다.

(29) 通文館志 卷5 交隣上

(30) 同上

(31) 列朝受職之倭 有時多寡 己酉約條時 亂前受職者 則不許接待 亂後 有功 藤永正等五人 (度支志 第 8册 卷16, 接待對馬島人 新定事例條

仁祖 13년에 兼帶制를 實施할 때 受職人船을 모두 兼帶送使船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中絶 5船이라고도 한다. 受職人이 모두 사망한 후 對馬島主의 간청에 따라 1特送船에 붙여서 보내도록 하였는데 宴享 回賜 求請 등은 과하였다.

五人俱死後 因島主之懇請 進上等公貿 依前式 付送於一特送 而宴享 回賜 求請等物并 革

(4) 差 倭

위에서 살핀 것은 定規的으로 送使 및 貿易을 위하여 渡來하는 倭船이며 差倭는 非定規的으로 오는 送使船이다. 己酉約條에는 差倭에 대한 規定이 없으므로 年例送使船 이외에는 접대하지 않았으나 뒤에 島主와 그의 副官 平調興이 서로 싸울 때 差倭의 접대를 許容한 사실이 前例가 되어 島主 義成가 歲遣船 兼帶를 빙자하여 교묘하게 名分을 만들어 빈번하게 來往하고 朝鮮은 이를 금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接待費가 늘어나 많은 弊害가 일어났던 것이다.

「(前略) 義成乃憑兼帶船事 巧作名目 頗數往來 不可禁止 其費尤倍於送使 遂爲無窮之弊實焉」⁽³²⁾

이러한 差倭에는 德川幕府의 將軍(關白)이 薨去하였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보내온 關白 告訃差倭, 關白의 承襲을 알리는 關白承襲差倭, 島主承襲差倭, 通信使의 派遣을 요청하러 오는 通信使請來差倭 등을 비롯하여 派送해 온 各樣 差倭의 號稱이 23세가지에 이르고 있다.⁽³⁴⁾

(5) 各樣入送倭船의 定員

이상에서 살핀 島主의 歲遣船, 受圖人送使船 및 差倭船에 타고 오는 倭人에는 正官 副官 都船主 2船主 進上押物 侍奉 伴從 格倭(船夫)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만든 것이 <表 5>이다.

<表 5> 各船別年例入國倭人

歲遣 第1船	正官1人·都船主1人·封進押物1人·伴從3人·格倭40人·水木船格倭15人.
歲遣 第2船	正官1人·伴從1人·格倭40人
歲遣 第3船	同 上
{ 自 歲遣 第4船 } { 至 歲遣 第10船 }	每船에 正官1人·伴從1人·格倭30人
{ 自 歲遣 第11船 } { 至 歲遣 第17船 }	每船에 正官1人·伴從1人·格倭30人

(32) 通文館志 卷5, 交隣 上

(33) 同 上

(34) 度支志 第 8册 卷16, 接待對馬島人 新定事例

〔自 1特送使船〕 〔至 3特送使船〕	每船에 正官1人·都船主1人·2船主1人·封進押物1人·侍奉1人·伴從7人·格倭30人·副船格倭30人·水木船格倭20人 (但3特送使은 格倭40人)
副特送使船	正官1人·副官1人·都船1人·2船主1人·留船主1人·押物進1人·私卜押物1人·侍奉1人·伴從7人·格倭40人·副船格倭30人·水木船格倭20人
萬松院船	正官1人·都船主1人·封進押物1人·伴從3人·格倭40人·水木船格倭15人
以酌菴送使船	正官1人·伴從3人·格倭40人
平彥三送使船	正官1人·封進押物1人·伴從3人·格倭40人
中絶5船	正官1人·伴從1人·格倭 未知

出典：通文館志 卷5 交隣上 및 度支志 第16冊

表에서 보듯이 歲遣船과 受圖·受職人船 등으로 年例的으로 入國하는 倭人은 正官 27名, 伴從 57名, 其他 27名, 格倭 960名(但 中絶5船 不包含) 合計 1,069 名에 달한다. 이 數는 兼帶制 실시후 상당히 減少되었을 것이나 그 反面에 差倭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減少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다음에 各樣 差倭船을 타고 오는 倭人類에 관하여 살펴본다.

〈表 6〉 差倭船 入國倭人

關白告訃差倭	正官1人·都船主1人·押物1人·侍奉1人·伴從14人·格倭60人
關白承襲告慶差倭	正官·都船主·押物各1人·侍奉2人·伴從16人·格倭70人
島主告訃差倭	正官·押物·侍奉官各1人·伴從7人, 格倭40人
弔慰差倭	正官·押物·侍奉各1人, 伴從10人·格倭40人

出典：通文館志 卷5, 交隣上

煩雜을 避하기 위하여 〈表 5〉에서 4가지 種目的의 差倭만을 들었으나 餘他の 差倭도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差倭의 경우 伴從과 格倭의 數가 年例入國倭船에 비하여 많음으로 總人員數가 훨씬 많다. 위에서 살핀 入國倭人數의 多寡는 후술할 接待費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3) 通信使

日本은 鮮初에 室町幕府의 第3代 將軍 足利義滿이후로 자주 國王使를 派遣하였으나 朝鮮은 前期에는 申叔舟를 書狀官으로하여 한번 派送했고, 壬辰亂前에 日本(豐臣秀吉)의 侵略意圖를 살펴보기 위하여 黃允吉(正使) 金誠一(副使) 許箴(書狀官) 등 一團의 使臣을 派送한 일이 있었을 뿐 國王使以下 日本各處에서 出來하는 日本側 使客을 倭館 또는 漢城에서 접대할 뿐이었다. 그런데 朝鮮後期에는 前期와 달리 朝鮮側 使臣의 渡日頻度가 상당히 잦았다. 壬辰亂이 끝나고 宣祖 40年에 許和 후 回答使를 派遣하였는데 그 이후로 부터 朝鮮側使臣을 信使 또는 通信使라 불렀다.

宣祖康寅 因其來請差遣 丁未許和後 又遣回答使 信使之名始此⁽³⁵⁾

(35) 萬機要覽 財用篇 5, 信使條

豊臣秀吉의 後裔를 打倒하고 江戸에 徳川幕府가 들어서고 朝日關係가 本格的 軌道에 오른 후 日本에서 關白(徳川幕府의 將軍)이 새로 繼承할 때 對馬島主의 請使에 따라 信使를 派遣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純祖 11年(1811年)에 이르기까지 12회에 걸쳐 回答使 또는 信使를 日本에 派遣하였다.

(a) 「前略 其後每於關白承襲之時 輒許差倭」⁽³⁶⁾

(b) 日本國關白新立 則待其請使 差遣通信使⁽³⁷⁾

通信使는 正使 1人 副使 1人 從事官 1人 堂上 3員 上通事 3員을 비롯한 各種 隨從員과 格軍을 합하여 5百餘名에 달하였다.⁽³⁸⁾

朝鮮後期에 日本에 派遣한 使行에는 通信使 이외에 對馬島에 派送하는 問慰官(問慰譯官)이 있었다. 이것은 對馬島主가 江戸(東京)에서 돌아오면 常例의으로 對馬島에 差送되는 것이다.

問慰官을 對馬島에 派遣하게 된 緣由를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壬辰亂 후 和請을 渴求하는 徳川家康의 眞意를 探知하기 위하여 宣祖39년에 倭學堂上 金繼信 등을 對馬島로 派送한 일이 있고, 仁祖 10년에 島主 平義成과 그의 副官 平調興이 서로 싸울 때에 그 眞狀을 알아보기 위해서 崔義吉을 派遣하였다. 이어서 仁祖 14년에 島主 平義成이 江戸에서 還島하여 平調興이 被罪逐出된 事實을 알리고 이를 慶賀해 줄 것을 청해 왔으므로 洪喜男을 特送하여 慰勞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島主가 江戸에서 돌아와서 差倭를 보내어 보고하고 問慰官의 派遣을 청하면 이를 허락하는 것이 常例로 되었다.

(a) 「(前略) 島主還自江戸(或因慶吊) 差倭報請 則輒許差送 仍爲恒例」⁽³⁹⁾

(b) 對馬島主還自江戸 則差送問慰譯官⁽⁴⁰⁾

이 問慰官은 孝宗 2年부터 哲宗 11年 사이에 51회에 걸쳐 對馬島에 派遣되었다.⁽⁴¹⁾ 問慰官行은 堂上官 1員 堂下官 1員 軍官 10人을 비롯한 各種 隨從員과 奴子 格軍을 합하여 80餘名에 이르렀다.⁽⁴²⁾

(36) 同 上

(37) 續大典 禮典 待使客條

(38) 增正 交隣志 卷5, 通信使行條 參照.

(39) 度支志 第 8册 卷16, 問慰官行條

(40) 續大典 禮典 待使客條

(41) 增正 交隣志 卷6, 問慰各年條 參照.

(42) 同 上

2. 通交關係 諸經費

1) 對倭使關係 諸經費

(1) 概 觀

對馬島를 비롯한 日本各處로 부터 渡來하는 使客에 대한 各種 支待와 公貿 등에 所要되는 諸般經費는 巨額에 달하였고 이것은 鮮初以來로 封建的 收奪로 饑餓線上에서 신음하는 農民에게 더욱 무거운 負擔을 안겨주는 동시에 國家財政에 重壓을 더하는 것이었다. 1년에 數千名씩⁽⁴³⁾ 渡來하는 상황아래 이들에 대하여 留浦期間과 過海時에 소요되는 食糧(倭料·倭糧)의 支給量만 하더라도 年間 2萬餘石에 달하였다.⁽⁴⁴⁾ 李朝政府에서는 慶尙道 星州以南의 各官田稅를 倭料의 財源으로 劃給하였으나 中宗 7년에는 그것도 부족하여 星州以北의 各官田稅를 添給하였고⁽⁴⁵⁾ 또 한때는 倭料支給으로 말미암아 全羅道와 더불어 李朝財政의 中樞를 이룩한 慶尙道 一帶의 所儲官穀이 殆盡하는 事態가 빚어졌다.⁽⁴⁶⁾

그리고 倭使들이 가져오는 金·銅·硫黃과 東南亞의 中繼貿易品인 蘇木(丹木) 胡椒 등에 대한 公貿의 代價로서 支給하는 綿布도 數萬疋에 달하였는데, 一例를 들면 成宗 6년에 27,208疋이 있던 것이 同王 7년에는 37,418疋로 증가하여 所定의 財源으로서 充給하지 못하고 漁稅와 各司 貢賦를 이에 轉用하는 있는 實情이었다.

今考倭人支給綿布之數 乙未年 京中九千八百二十七匹 慶尙道一萬七千三百八十一匹 丙申年京中 二萬一千五百五十八匹 慶尙道一萬五千八百三十三匹 如此年倍加 京中布貨 留儲數少 將至難繼 請從慶尙道納田稅糙米 司宰監納魚船箭綱稅 內瞻寺納清蜜小豆限 倭人支給足用 問以綿布計折 各其官收納會計施行⁽⁴⁷⁾

그리고 國王使以下 各處使客에 대하여 그 階層에 따라 배풀어 주는 各樣 宴享과 畫捧, 京中日供 등에 소요되는 經費와 또 使客에게 木綿 白紵布 麻布를 비롯한 各種財貨를 賜給하는 例賜와 別賜 및 送使·貿易船에 支給하는 修船給粧費등 諸般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여기서 國使에 대한 宴享만 살펴보면 國王使가 三浦에 在留하는 동안 宣慰使와 差使에 의한 3회의 設宴과 回還時에 1회의 宴享이 있고 또 中途路宴으로서 慶尙道에서 監司가 1

(43) 世宗 元年에는 使送倭人の 數가 6,116名에 달하였다.

(世宗實錄 卷2, 元年 12日 己酉條 參照)

(44) 慶尙道倭料 一年所給 至二萬二千餘碩 (中宗實錄 卷8, 4年 3月 甲寅)

(45) 「(前略) 倭料 亦以慶尙道星州以下穀輸給 又量其船隻大小 所遣不費 其道所儲之穀殆盡 今後則不得已輸給 星州以上之穀……」

(中宗實錄 卷7, 4年 1月 丁巳)

(46) 成宗實錄 卷11, 6年 1月 丙寅條

(47) 成宗實錄 卷13, 7年 11月 癸丑

個處, 守가 2個處, 忠淸·京畿兩道에서 監司가 각각 1個處에서 宴享을 베풀어주며 國王使가 漢江에 到着하던 京中迎餞宴을 設宴해 주며 留京時에 關內宴 禮曹宴 名日에는 名日宴 등을 設行하였으며 餘他 諸使에 대해서도 각각 所定の 宴享을 設行해 주었다.⁽⁴⁸⁾

이 상에서 朝鮮前期의 倭使에 대한 接待 倭料의 支給 公貿關係 등에 所要되는 經費에 관하여 略述하였으나 다음에 大同法이 設行된 王朝後期의 對倭使 所要經費를 項目別로 살펴본다.

(2) 糧米·雜物·宴享·柴炭費

年例送使船과 差倭船이 대개 85日 내지 110日동안 釜山倭館에 머물고 있는동안 朝鮮政府에서는 使客의 階層에 따라 所定の 茶禮와 宴享을 베풀어 줄 뿐 아니라 入國한 全倭人이 消費하는 食糧을 비롯하여 魚物 果實 醬油 柴木 등 館內의 생활에 필요한 物資를 공급해 주었다.

각 送使船에 타고오는 定數의 倭人에 대하여 所定の 糧米를 支給하였는데 참고로 1特送使와 歲遣 第1船에 대한 給糧規定을 보면 <表 7>과 같다.

<表 7> 倭船給糧表(1特送·歲遣 第1船)

1特送船	每日: 正官料米 4升 餅米 3升 太 1斗 2升 都船主以下各料 米4升 餅米 3升 太 1斗 伴從 7名 各料米 4升 餅米 3升 太8升 格倭 各料米 2升 渡海糧米 5石 8升 (留館 110日)
歲遣 第1船	每日: 正官以下 3人 各料餅米 5升 太 6升 伴從 2人 各料餅米 4升 5合 太 4升 5合 格倭 各料米 2升 渡海糧米 3石 12斗 (留館85日)

出典: 通文館志, 卷5, 交隣 上

<表 7>에서 보듯이 送使船이 約 3個月동안 浦所에 머물고 있을 때 倭人에게 매일 所定の 食糧을 지급하며 또 歸還할 때는 渡海糧米를 지급하고 있는데 前者를 料, 後者를 糧이라 하여 兩者를 구별하고 있다.

差倭糧料 留館時曰料 渡海時曰糧⁽⁴⁹⁾

그리고 糧米 이외에 正官 都船主 封進押物 伴從 등 使客(員役) 一行에 每日 所定の 雜物을 給與하고 있는데 가령 歲遣 第1船의 正官에 賜給한 日供物種과 그 수량은 <表 8>과 같다.

(48) 海東諸國紀 諸使定例條 參照

(49) 萬機要覽 財用篇 5, 倭糧料條

<表 8> 日供物(歲遣第1船正官)

酒米 2升 醋米 4合 醬太 4合 眞油 1合 3勺 白蛤醃 6勺 鹽 3合 芥子 4勺 乾魚 5尾 薑 2兩 青魚 4尾
 大米 1升 粘米 1升 淸蜜 5勺 廣魚 4條 全鰓 2介 黃粟 3合 大麥 3合 生鮮 1尾 大口魚 1尾 沙魚 4
 條 文漁 1條 乾柿 2串 海蔘 5合 眞曲 7合

出典：增正交隣志，卷1 兼帶條

또 使節1行에 대하여 그 階層에 따라서 所定の 茶禮와 宴享을 베풀어 주었는데 1特送使와 歲遣第 1船의 使客의 경우를 보면 <表 9>와 같다.

<表 9> 茶禮·宴享(1特送使·歲遣 第1船)

1特送使	別宴1回 路次宴1回 名日宴4回 下船宴1回 下船茶禮1回 進上看品茶禮1回 禮單入給茶禮1回 上船宴1回 別下程例下程各1回
歲遣第1船	下船茶禮1回 下船宴享1回 名日宴3回 進上看品茶禮1回 禮單入給茶禮1回 上船宴1回

出典：通文館志 卷5, 交隣 上

1特送使에 대하여 3회의 茶禮와 9회의 宴享 歲遣 第1船의 送使에 대하여 茶禮 2回 宴享 5회를 각각 設行해 주고 있는데 餘他の 入送使에 대해서도 각각 所定の 茶禮와 宴享을 베풀어 주었다. 이에 소요되는 物種은 穀物·魚物·肉類·酒類·油蜜·果實 등이며 그 비용이 巨額에 달했을 것이다.

이상 列擧한 바와 같은 倭客에 支給한 糧米 日供雜物 및 設宴에 소요된 年間經費를 米로 換算한 것이 28,013石 2升 3合 3勺이에 달한다.⁽⁵⁰⁾

이밖에 留館중인 倭客에게 <表 10>에서 보듯이 매일 所定の 柴炭도 지급하였다.

<表 10> 柴炭支給量(日當)

職 名	炭	柴
館守·正官 副官·一代官	每人當 1石	每人當 10束
都頭·禁徒	每人當 9斗	每人當 9束
船 主	9斗	6束
押物封進	9斗	5束
代官, 書僮, 通事 禁徒, 醫倭, 私卜押物 侍奉, 書記	每人當 3斗	每人當 5升

出典：增正交隣志 卷4, 柴炭支給條

仁祖17年에 設定한 館守倭와 禁徒, 館內職員 및 正官이하 使客에게 階層에 따라 一定

(50) 增正 交隣志 卷1, 兼帶條

량의 柴炭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柴炭을 처음에는 慶尙左·右道各鎭에서 釜山鎭(僉使營)으로 措備·輸納하던 거기서 倭館에 지급하였으나 仁祖 8年 이후 各鎭浦의 防軍價布에서 每年 木綿 73疋 30疋을 釜山鎭으로 劃給하여 거기서 措備·支給토록 入給方法을 바꿨는데 이를 米로 換價(米1石=2疋半)하면 1,476石에 달한다. 英祖 2年에 限外入給을 認定하도록 入給規定을 緩和한 후에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給倭柴炭 初則使慶尙左右道各鎭 埋炭 刈柴 輸納釜山鎭 本鎭捧置支給矣 仁祖八年庚午 以各鎭浦防軍價布中 每年七十三疋三十疋 劃給釜山鎭 使之專當(埋炭則七石五斗五升 柴則一百五十束) 入給而例 限外不給……(51)

(3) 回禮禮單費

年例入送使와 隨時入送하는 差倭는 각각 所定의 進上物과 交易品(公貿物資)을 가져왔다. 여기서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年例入送使인 1特送使와 萬松院送使 및 差倭인 關白告訃倭使가 가져온 進獻 및 公貿物種과 그 수량만을 표를 만들어 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 入送使節의 貢來品

使 節 名	進 上	貿 易
1特送使	朱紅2斤, 彩畫硯匣1備, 胡椒500斤, 蘇木700斤, 白攀300斤	銅鐵 4,300斤 鐵鐵 2,400斤
萬松院送使	金屏風1雙, 赤銅累盃盤1部, 胡椒500斤, 蘇木700斤, 白攀200斤	銅鐵 1,100斤 鐵鐵 1,002斤8兩
關白告訃倭	彩畫掛硯1備 大和眞珠5斤 金屏風1雙外13種	

出典: 通文館志 卷5, 交隣 上, 度支志 第8册 卷16, 年例送使條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例入送使는 日本의 仲繼貿易品인 胡椒 등 南方產物과 自國生産物인 金製品 등을 주로 하는 進獻物과 自國產物인 銅鐵을 주로 하는 公貿物資를 가져왔고 差倭는 進獻物만 가져왔다. 朝鮮政府에서는 進上에 대한 回賜品(禮單)과 公貿品에 대한 代價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各 入送使에 대하여 지급한 回禮賜給物과 公貿價의 內譯에 대하여 일일이 밝힐 수 없으므로 1特送使와 萬松院送使에 대해서만 살펴 보면 <表 12>와 같다.

(51) 上揭書 卷4, 柴炭支給條

〈表 12〉

回禮禮單 및 公買價

1特送使	禮曹回賜品：人蔘3斤，虎豹皮各2張，白苧布5疋，白綿紬黑麻布各4疋，白綿布10疋，筆墨各30，鷹2連，花席5張	求請物：人蔘1斤10兩，筆墨各30，花席3張，白紙6卷外21種	進上價公木：16同6疋112	公買價公木115同31疋11尺
萬松院送使	禮曹回賜：人蔘3斤，虎豹皮各1張，白苧布白綿紬黑麻布各3疋，白綿布5疋，花席5張，墨筆各20 參判回答：人蔘2斤，虎豹皮各1張，白綿細白苧布各10疋，黑麻布7疋，白木綿20疋外 3種 參議回答：人蔘2斤外9種 東萊釜山回答：大略위와 같음 3度宴享時別賜：人蔘，布類 등 接慰官私禮單：大略위와 같음	求請物 同 上	進上價公木：15同 27疋11尺	公買價公木 53同15疋

出典：通文館志，卷5，交隣 上

表에서 보듯이 倭使에 대하여 回禮로 回賜 回答 別賜 求請 求禮單 進上價 등의 名目으로 賜給하는 廣義의 禮單은 人蔘·布貨類 皮革 등이 主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萬機要覽 당시에 隨時入送使(差倭)를 제외한 年例入送使에 대해서 賜給하는 禮單物의 價額이 34,819兩이며⁽⁵²⁾ 이를 米로 換算(每石當7兩)하면 4,973石이 된다.

그리고 仁祖 17年에 留館倭人들의 館外無斷出入과 潛商行爲 등 不法의 활동을 規制하기 위하여 東萊倭館에 館守倭를 두었는데 이 館守倭도 別幅이라는 名目으로 進獻物을 바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回禮로서 總價額 2,479兩에 달하는 人蔘 皮革 布貨 등의 財貨를 賜給하였다. 이를 米로 換算하면 354石이다.

또 年例送使 외에 隨時渡來하는 差倭가 仁祖 13年 兼帶制 실시 이래로 來往하는 頻도가 점점 높아져 갔는데 年 平均 1回로 推定하고, 隨時差倭인 裁判差倭에 대하여 賜給한 禮單費가 5,679兩(折米 811石)이므로⁽⁵³⁾ 餘他 差倭에 대한 禮單을 이와 同額으로 推定한다. 이리하여 各樣 倭使에 대하여 賜給한 연간 總禮單費는 年例入送使 4,973石, 館守倭 354石, 差倭 811石으로 모두 6,138石에 달한다.

(4) 公貿易價

(A) 公作木

公木 또는 公作米라 하는 것은 〈表 11〉에 보는 바와 같이 年例入送使가 交易을 위하여 가져오는 銅·鐵 등의 鑛物을 주로 하는 公貿易品에 대한 代價로서 지급하는 木綿을 말하는 것이다. 鮮初에 倭使들이 가져오는 交易品을 商人을 통하여 販賣하였으나 交易品이 늘어남에 따라 販賣가 不振하여 損害를 보게 되고 그들의 불평이 심했기 때문에 朝鮮

(52) 萬機要覽 財用篇 5, 差倭禮單條

(53) 同 上

政府에서 公貿易을 허락하고 交易品の 代價를 木綿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를 公作木 또는 公木이라 불렀던 것이다.

倭使所持私貨 初則只令商買賣 貨物漸多 不能盡售 每致銷折 彼人以爲寃 朝廷許以 公貿 計給木綿 此乃公木之始也⁽⁵⁴⁾

光海君 元年의 許和 以來로 倭人들이 가져오는 交易品이 점점 增加함에 따라 이를 統制하기 위하여 同王 5年에 東萊府使 李昌庭의 狀請에 따라 前揭表에서 보듯이 年例送使船으로 搬入하는 公貿易의 品目과 數量을 定限하는 約條를 맺었던 것이다. 仁祖 13年 兼帶制 실시 후 每年 公貿易로 支給하는 公木은 1,121同 44疋 32尺 2寸인데 이것을 慶尙道 沿海 各邑의 田稅作木으로서 調達·충급하고 不足額은 山郡 田稅作木으로서 보충키로 하였다. 이 公木의 調達을 위한 田稅作木規定 즉 田稅米·太 1石에 대한 木綿 折價率은 稅太 1石 當 木 2疋, 稅米 1石 當 木 3疋, 三手米 1石 當 木 3疋半이었다.⁽⁵⁵⁾

그런데 孝宗 2年과 顯宗 元年 두번에 걸쳐서 公木가운데 400同에 대해서는 米로 入給하고, 殘餘 721同 44疋만 本色으로 支給키로 하였다. 처음에 公木 1疋을 8升木 40尺으로 정하였으나 그 品質이 점점 劣惡해짐에 따라 倭人들의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倭館에서 번번히 入給을 拒絶하는 點退를 敢行하였기 때문에 公木의 納稅者인 慶尙道 各官 農民들의 고통이 컸다.

日本側과의 約條에는 公木 1疋=8升木 40尺로 規定한 것으로 믿어지나 對內的인 田稅作木에 있어서는 田稅米 5斗=公木 1疋로 折價하여 徵稅하였다. 그런데 9升木의 歲幣上木 1疋의 價米가 2石이었고, 5升木 35尺의 大同木 1疋의 京中交換率이 米 5斗였다는 事實을 勘案할 때, 稅米 5斗=公木 1疋의 作木徵稅는 元稅率의 數倍에 달하는 搾取이므로, 農民이 納稅하는 公木의 品質이 5升木으로 低下된다는 것은 事理의 當然한 歸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民은 點退로 말미암아 莫大한 弊害를 입는 것이었다.

英祖 34年 東萊府使 趙曦의 狀請에 따라 公木 700餘同가운데 400同을 作錢하여 公木 1疋에 2兩 3條씩 折價하여 農民으로부터 徵稅해서 3錢은 各官公用에 補充하고 2兩은 商人에 支給하여 人蔘을 購入하여 倭館에 入給키로 하였고, 또 英祖 甲午年에 200同을 더 作錢·入給키로 하였다. 그 후 倭人들의 要請에 따라 正祖 14年, 19年 및 21年에 각각 100同씩 計 300同을 도로 還木하여 元來와 같이 木綿으로 支給토록 하였고, 또 純祖 5년에는 殘餘 300同을 모두 還木·入給케 하였다.

(54) 上揭書 公貿條

(55) 同 上

그런데 田稅의 稅物米木 대신에 公木을 納付하는 慶尙道 沿海 各官의 農民들은 倭館에 의한 點退·改備로 말미암은 弊害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各邑의 公木을 徵收하는 東萊府의 官員과 倭館入給 關係機關의 官員들에 의한, 이른바 別情의 誅求를 비롯한, 規外濫徵으로 莫甚한 弊害를 입었다.

道內近沿諸邑 有公作木 而下納時 濫捧轉甚 元情之外 有所謂別情 隨其土產 無物不有 種種色色 難以勝記 而槩以折價合計 則大邑多至七百餘兩 小邑亦爲百數金 且於物種中 或有品劣 則必點退元木 厚索情錢⁽⁵⁶⁾

즉, 東萊府의 官吏와 釜山鎭 城內에 設置한 公木收藏庫의 色庫輩들에 의한 規外誅求가 大邑의 경우 700餘兩에 달하여 農民들이 破産하는 實情에 있다는 것이다. 이 公木 721同 44疋을 米로 換算(公木1疋=12斗)하면 28,875石 3斗가 된다.

(B) 公作米

孝宗 2년에 日本側에서 公木의 一部를 換米·支給해 줄 것을 請願해 왔으므로 朝鮮政府는 公木 300同을 5年동안 作米·入給할 것을 許諾하였고, 顯宗 元년에 日本側에서 다시 100同을 더 作米할 것을 請願하였으므로 이를 許諾하여 合計 400同에 대한 價米 16,000石을 每年 支給해 왔는데, 이를 公作米 또는 公米라 한다. 公木의 作米期間을 5年으로 定限했기때문에 每 5年(甲·己年)마다 裁判倭를 보내어 更新·延長을 간청하므로 그때마다 이를 許諾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음에 稅太는 7斗 5升, 田稅米는 5斗, 三手米는 6斗를 公木 1疋로 각각 折價하며 慶尙道 各官의⁽⁵⁷⁾ 農民에게 徵收하여 倭館所在地인 東萊府에 바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公木을 다시 作米함에 있어서는 公木 1疋에 田稅의 경우 元折價額보다 7斗가 더 많은 12斗씩으로 換算하여 農民에 徵稅하였다. 이와 같은 掠奪의인 高率의 公木作米率에 대한 農民들의 怨聲이 높았기 때문에 부득이 肅宗 己未年에 2斗, 英祖 癸亥年에 2斗씩 각각 減額하여 公木 1疋에 8斗씩 徵稅하였다. 그래도 元來의 換價率인 5斗=1疋에 比하여 3斗나 많은 것이다. 이리하여 1疋當 4斗씩의 減額으로 因하여 招來되는 倭館 入給不足量을 宜惠廳位米와 大同米로서 充當하여 入給했던 것이다.

그 후 公作米 納米邑의 稅收가 減縮되어 所定의 經費 需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隣近邑의 大同米 4,844石 12斗를 劃給·補充하고 그 代價를 梁山 등 19邑의 稅米(田稅米) 3,028石을 公作木의 例에 따라 石마다 3疋씩으로 折價作木한 公作木 9,084疋을 다시 公作木 1疋에 米 8斗씩으로 折價·作米한 公作米 4,844石 12斗를 農民에 徵稅하여 戶曹에서 宜惠

(56)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10月 13日

(57) 公木·米를 納付한 郡邑은 東萊 機張 慶州 大丘 仁同 漆谷 蔚山 星州 善山 草溪 高靈 寧海 盈德 淸河 興海 延日 長鬐이다.

廳으로 換納하였다. 이와 같이 戶曹의 田稅를 宜惠廳으로 換納한 理由는 元來 公買價를 戶曹에서 負擔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田稅米를 公木으로, 또 公木을 公作米로 換作을 反復하는 過程에서 交換率을 처음 稅米 5斗=公木 1疋에서 公木 1疋=稅米 8斗로 引上함으로써 農民 實質負擔率을 60%나 높히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分析한 公作木과 公作米로 이룩되는 對日 公貿易價를 米로 換算하면 44,875石으로 對日 外交費 總額의 약 折半을 차지한다. 兩國間의 交易이 商業的 베이스가 아닌 政治的 外交的 範疇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公買價는 廣義의 外交費에 속하는 것이다. 公買와 進獻·回賜關係로 이루어진 輸出入商品構造를 관찰해 보면, 輸入商品은 주로 銅鐵의 鑛山物과 胡椒 등 南方產物로 되어있으며, 輸出商品은 人蔘·織物(綿·麻布)·米穀 등으로 되어 있다. 輸出品 가운데 人蔘을 除外한 織物과 穀物은 基本的 生活必需品인데 反하여 輸入品은 調味料와 工業化가 進展되지 않았던 당시의 農耕社會에서는 그다지 緊要하지 않던 鑛山物이었다. 銅이 弓角 등 兵器와 後期の 鑄貨(常平通寶) 및 食器 등의 材料로 使用되었을 뿐이다.⁽⁵⁸⁾ 당시의 爲政者들도 公買輸入品이 國家에 無益한 것일 뿐 아니라 大典規定을 無視하고 市價의 10倍에 달하는 高價로 折價한 價格을 支拂함으로써 莫大한 損失을 가져오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皮棘하고 있다.

「(前略) 至於公買之事 則經國大典 雖許准市價 給答賜……自定價以後 反爲痼弊積而漸夥 至於此極 而其所納 銅鐵蘇椒等物 無益於國家之經用 所折價直 則並皆十倍 於私商之買賣 故歲給公木 爲疋積六萬疋」⁽⁵⁹⁾

交隣의 名分 아래 不緊物資를 高價支拂하는 不平等交易과 對內的으로는 強奪的인 高率의 稅米作木과 公木作米로 말미암은 農民의 弊害가 莫重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分析한 倭使關係 所要經費를 整理하면 ① 糧米 日供雜物 등이 28,013石, ② 柴炭價 1,476石 ③ 回禮 禮單費 6,138石 ④ 公買價 가운데 公木價米 28,875石 公作米 16,000石 都合 80,502石에 달한다. 그러나 館宇修理費를 비롯한 計算할 수 없는 項目이

(58) 公買品 가운데 倭銅은 弓角 鑄器 常平通寶의 材料로 使用되었던 것인데 正祖初期에 어떠한 理由인지는 몰라도 한동안 倭銅이 搬入되지 않아 弓角契人이 弓角을 製造納品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의 怨聲이 높았으므로 朝鮮政府에서는 倭館所在 東萊府使에게 倭銅搬入의 正常化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示達하고 있다.

(a) 弓角契人 難支之弊 由於倭銅之愆期 倭供差退 莫近日若也 甚至於己亥以後之條 尙不出來 故契人輩 受價無期 (承政院日記 正祖 5年 11月 16日)

(b) 鄭民始曰 以倭銅之愆期不來 前後朝家申飭 非至一再 而一年條出來之後 又復如前遲滯 非但賁人之稱寃 此乃年例上納者 則違越年限 若是稽緩 事極痛駭 訓·別輩若能惕念舉行 則豈有如此之弊乎 令該府使嚴飭訓·別使之各別催督 越節推出……

(承政院日記 正祖 5年 9月 1日)

(59) 通文館志 卷 5, 交隣 上

包含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朝鮮側 使節(通信使)의 經費

朝鮮에서 隨時로 派遣하는 通信使와 問慰官의 使行에 所要되는 經費는 通信使의 경우 京外路資條로 戶曹例下衣資, 別盤纏 中路私禮單 慶尙 全羅 忠清 江原 4道卜定이 있고, 또 國王 對馬島主와 中路 各處의 諸酋들에 贈給하는 禮物로서 別幅 三使臣私禮單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路資와 禮物로서 가져가는 物種은 米穀 綿 麻布 人蔘 皮革 席子 磁器類 紙物 油蜜 筆墨 果實類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問慰官 1行에 대해서는 路費條로 戶曹例下衣資 堂上官衣資와 禮物로는 別幅이 있는데 物種은 通信使의 경우와 類似하다. 朝鮮後期에 通信使의 派遣이 11回, 問慰官이 51回 兩者를 合해서 62回이므로 약 4,5年만에 한 번씩 往返하는 셈이다. 이것을 年 20餘 使行이 渡來하는 倭使(兼帶以前)에 비한다면 그들의 一方的 派遣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通信使와 問慰官의 使節派遣에 소요된 經費를 일일히 계산하기가 容易한 일이 아니므로 正確한 계산은 후일의 課題로 미루고, 여기서 日本側 送使船인 歲遣第1船과 1特送船의 經費를 勘案하여 概算의으로 推定하면 通信使行 3,000石, 問慰官行 1,000石 程度로 보아진다. 이와 같이 推定한 兩使節에 대한 後期의 總費用은 87,000石이 되는데 年間 平均費用이 약 250石으로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後期에 있어서 公貿를 包含한 廣義의 對日外交關係 所要經費의 年平均 推定額은 80,752石이 되는 것이다.

清初(仁祖期)에 對中外交關係費가 年平均 140,000石이었고 歲幣·方物이 減定된 이후의 그것이 약 100,000石으로 推定되므로,⁽⁶⁰⁾ 交隣路線을 口號로 한 對日關係費가 對中事大外交費에 肉迫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對日交隣外交의 실패가 실은 倭寇防止를 위한 寬容과 懷柔에 立脚한 厚待外交에서 초래된 결과이다. 三南沿岸에 수많은 軍事基地(營·鎭·鎭堡·山城)를 設置하고 軍布 結作 田稅에서 巨額의 軍事費를 支出하면서도 주로 對馬島를 중심으로하여 出沒하는 小規模의 倭寇를 禁壓하지 못하며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倭料 日供雜物 設宴 등의 일방적 支出에 巨額의 經費를 消費할 뿐 아니라 價値의 10 배를 支拂하는 不等價交易(公貿)에 4萬餘石의 經費를 消耗하고 있다.

이제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農民收奪위에 安逸만을 追求하는 無能한 兩班階級에 의한 懷柔와 厚待로 특징짓는 소위 對日交隣外交에 消費되는 막대한 經費는 農民의 負擔으로

(60) 拙稿 大同法研究(一)「釜山水產大學 論文集 第13輯」所收 對中外交費 參照

歸着되고 封建的 收奪로 궁핍에 허덕이는 그들의 생활을 더욱 貧困의 구렁으로 몰아 넣는 것이다.

VI. 上納米의 用途

1. 概 觀

慶尙道 大同收租額과 嶺南廳 上納관계를 살펴보면 <表 13>에서 보듯이 英祖45년에 收租額 15,498石가운데 米·木·錢으로 바친 上納額은 收租額의 54.6%에 해당하는 81,554石이며, 純祖 24년에는 收租額의 55%에 해당하는 8萬餘石이다. 그런데 이 計算에는 田貢條 位太米木을 除外했고 公作米를 上納에 加算하였다. 公作米를 上納條에 加算한 이유는 이것은 비록 倭館所在地인 東萊府 釜倉으로 輸納된 것이나 그 儲置米가 아니고 上納米에 準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表 13> 慶尙道大同收租 및 上納內譯

	英祖45年	純祖24年
總收租額	151,498石	149,356石
上 納	米 33,771石 綿布 67,400疋 (折價米 22,467石) 錢 134,800兩 (折價米 26,920石) 公作米 3,294石 計 86,452石	米 35,550石 綿布 1,522疋 2疋 (折價米 25,368石) 錢 131,394兩 (折價米 17,342石) 公作米 3,294石 計 81,554石
田 稅 條	位米 25左 位太 1,277石 綿布 3,101疋	上 同 " " " "

出典：文獻備考 田賦考13, 嶺南廳事例捧上條

英祖 39년에 개정한 大同貢案에 의하면 嶺南廳에서 上納米를 支給한 官署는 奉常寺 濟用監 長興庫 尙衣院 등을 위시한 25個 官署이고 貢·契人은 鷹師主人 襦紙衣契 歲幣契 白綿·大·小好紙契 干涉銃契 修理契 公事紙契 등 12個種目으로 都合 37頁이며 이에 대한 嶺南廳 歲出豫算額은 米 55,209石이다. 純祖期에 嶺南廳에서 年間 500石 以上の 貢價米를 支給한 對象은 <表 14>와 같다.

貢價의 最高支給處 즉 最大支出項目은 各官署와 闕內에 燒木·炭·楛炬 등을 備納하는 其人이며 支給額이 米 9,548石에 달한다. 그 다음은 對中進獻의 織物 人蔘等事를 管掌하는 濟用監에 支給하는 白線布 白苧布 등의 購入價 3,100石이고, 세제는 對清朝貢品인 上歲幣(白上木, 生上木)를 備納하는 廳人에 대한 2,389石의 給價이고 네제는 祭享物種의 供上

<表 14>

嶺南廳 貢價支給處(但 500石 以上)

支給處	支給額	支給對象物種
奉常寺	2,113石	清蜜, 黃蜜, 楮注紙, 乾柿, 草席, 大口魚, 小麥, 白米 其祭享物
典牲署	809	生豬, 羊, 黃牛 등 犧牲
司導寺	738	粳米 中米 黃豆
濟用監	3,100	正布, 7升白綿布, 白升白苧切 白燔 常綿子 등
尙衣院	1,703	雪綿子 正布 中綿子
長興庫	837	供上射 草常注紙 등
其人	9,548	燒木炭, 柵炬, 柵木
狗皮契	837	鹿皮 獐皮 豬皮 水獺皮 封裹雜物
修理契	1,435	搗鍊紙 搗鍊楮注紙, 草席, 油苳, 草注紙 등
各廳歲幣	2,389	上歲幣(白上本)
京主人房子役價	1,357	京主人房子役價, 每名 嶺南 23石 兩湖 20石

出典: 嶺南廳事例 捧上條

衙門인 奉常寺에 支給하는 淸蜜 黃蜜 眞油 大口魚 등 祭享物 購入價 2,113石이고 다섯째는 闕內에 소위 御衣를 비롯한 衣類를 調達·供給하는 尙衣院에 支給하는 雪綿子 正布價 1,703石이다. 여섯째로는 闕內修理에 所要되는 紙物과 草席을 備納하는 修理契에 支給하는 1,435石이다. 嶺南廳에서 貢價米 1,000石 이상의 支給處는 위와 같은 것이나, 여기서 嶺南廳 支出項目 가운데 몇가지의 중요한 것만을 檢討해 본다. 前稿와 重復되는 것도 있었으나 補充說明하는 뜻에서 再檢討하는 것이므로 讀者의 諒解를 바란다.

2. 主要支出項目的 檢討

① 狗皮契

이것은 三名日進上皮物과 對淸歲幣皮物의 質納을 擔當하는 貢契인데 <表 14>에서 보듯이 萬機要覽에는 給價額이 837石으로 되어 있으나 그 뒤에 刊行된 嶺南廳事例에는 1,339石으로 增加하고 있는데 推測컨대 그동안에 元貢의 加定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大同法設始當時에는 對淸 方物·歲幣物種인 鹿皮(每張價米 5石1斗5勺)와 水獺皮(每令價米 3石9斗)의 두가지 만을 狗皮契에서 備納토록 하고 三名日進上鹿皮와 豬皮 및 豹皮 등은 外貢으로 指定하여 監·兵·水營에서 封進토록 하였으나, 肅宗 39년에 塵人들의 要請에 따라서 이를 京貢으로 移作하여 狗皮契에서 備納토록 하였다.⁽⁶¹⁾

② 鷹師契

이것은 각 殿·宮에 生雉의 備納을 擔當하는 貢契인데 朝鮮前期부터 京中은 勿論이고 地方에도 鷹師와 그 保戶를 두고 砲手와 民丁을 狩獵에 動員하여 生雉 등을 捕獲·上納케 하였다. 肅宗 39년에 民弊를 덜기 위하여 鷹師定役(身役)制를 革罷하고 生雉를 質納하는

(61) 嶺南廳事例 上下條

契人을 정하여 大同米에서 給價하기로 하고 이를 兩南(嶺·湖南)에 分半負擔시켰는데 嶺南廳에서 1,294石의 貢價를 鷹師契에 支給하는 것이었다.

供上生雉一種 措備以納 而當初則各邑 有鷹師戶保 使山行砲手 獵捉進排矣 康熙癸未 自朝家特軫民弊 自京給價 定契人 兩南分半進排⁽⁶²⁾

各 殿·宮에 대한 生雉進排內譯을 보면 年間 6個月 동안에 매일 大殿에 3首(每首價 米 7斗 7升 5合 8勺) 中宮殿에 2首씩 바치고 그외에 食鹽用으로 每年 100首씩 바치기로 되어 있다.

③ 白租紙 大·小好紙契

이것은 對清朝貢品인 白綿紙 大好紙 小好紙를 質納하는 貢契이다. 이에 관하여 忠淸道條에서 既述한 바 있으나, 嶺南의 事情이 多少 다른 것이 있으므로 여기서 言及하기로 한다.

이 紙物은 元來에 三南鹽稅를 該道에 還付하여 三南의 各 紙產邑에서 措備·上納토록 하였던 것인데 大同法 실시후 이를 大同稅(宣惠廳)에서 支給토록 하였다. 大同法 設始當時에 方物白綿紙의 對淸歲貢額이 11,200卷이었던 것이 뒤에 7,466卷으로 減額되었고 大好紙는 2,040卷, 小好紙는 3,081卷이다. 이를 三南에 分定함에 있어서 白綿紙는 各道の 收租結數(實結)를 基準으로 삼았으므로 每年 若干의 變動이 있겠으나 嶺南分定된 價米는 大略 1,330石 내외였다. 그리고 大好紙는 兩南에 分半配定하였고 小好紙는 三南에 一定額을 分定하였는데, 이 兩者의 嶺南負擔額은 米1,662石 5升이었다. 이리하여 嶺南廳에서 該契에 支給하는 貢價米는 2,990餘石에 달하였다.⁽⁶³⁾

그런데 만약 別使가 出來할 때는 上記의 經常歲貢額外에 臨時需要가 있게 되므로 이에 對備하기 위하여 白綿紙 八起恒留制를 採用하였다.

恒留八起(一起所入二千二十卷) 以備不時之需 別使及八起所縮者 即爲卜定 以充其數⁽⁶⁴⁾

臨時需用에 대비하여 戶曹에서 白綿紙 八起=16,160卷을 항상 準備해 두도록 한 것이다.

이 紙類의 措備方法을 살펴보면 大同法 設始 후 契人에 給價하여 質納케 하였는데 市中 紙塵人들의 불평이 심했으므로 肅宗 6年에 嶺南分을 塵人에 移給하였다. 그후 塵人과 契人이 서로 많이 請負하려고 다투었기 때문에 紛爭을 調整하기 위하여 同王 15年에 三南所貢의 紙物의 3分の 1은 塵人에게 3分の 2는 契人에게 각각 分給했다. 그 뒤에 塵·契人들이 納品하는 紙物의 品質이 점점 低下되어 갔기 때문에 그 半額을 外貢으로 移作하여 舊

(62) 同 上

(63) 同 上

(64) 同 上

八起恒留制에 관하여 이밖에 承政院日記 正祖 7年 10月 14日條 參照

例대로 三南에서 措備·直納토록 하였는데 民弊가 일어나 肅宗 27年에 다시 이를 京貢으로 還元하고 紙價支給單價를 引上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紙貢의 半을 三南에 外貢으로 還作한 후에 일어난 弊害에 관한 承政日記의 記事를 여기에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大小好紙一半 歸本道之役 無論山·海邑 一併分定 故曾前有紙所之邑 猶可支吾 而其他各邑 爲弊不貲 民皆呼冤 實爲難處 當初設置紙所之時 撫恤紙匠 定給奉足 且給復戶 通一道有紙所之居多 紙役雖重 猶能責應 自設貢物之後 紙所俱廢 紙匠散亡 今幾二十餘年 而猝然一朝 歸之本道 其弊端之甚多 不言可想 今若復設紙所 則公私庶可兩便云 三南監司處 則亦有偏苦難支之患 紙匠輩 給復戶 又給奉足 則田稅 由是減縮 良丁充數尤難 與加給紙價 利害相等 紙價之一斗加結 少無所益 而合而計之 則朝家之所失 額多矣⁽⁶⁵⁾

이 要旨를 설명하면 紙産의 有無를 莫論하고, 紙物을 三南各邑에 外貢으로서 分定하였기 때문에 非紙産邑이 입는 弊害가 莫甚하며, 大同法 設始 후 從前에 復戶와 奉足을 支給하는 紙匠을 두어 設置한 各邑의 官設紙所가 대부분 없어지고 紙匠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分定된 紙貢을 措備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各邑에 새로 官設紙所를 設置하려면 紙匠을 確保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復戶田과 奉足을 支給해야 하므로, 차라리 貢契·塵人에게 紙價를 加給해 주어서 紙品の 低質化를 防止하는 것이 費用을 節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17世紀에 復戶와 奉足이 支給된 官匠을 둔 官設紙所가 三南各邑에 廣範히 存在하고 있었음을 窺知할 수 있다. 그런데 大同法 設始 이래로 이 官設紙所가 폐지되고 紙契의 貢人들은 白綿紙와 大·小好紙를 三南 各處에 있는 寺刹 특히, 海印寺·雙溪寺·晉州 玉泉寺 등 嶺南의 巨刹과 每年 契約를 맺고 僧徒들이 生産하는 紙物을 購入하여 納品하였다.

大抵方物所用紙地 本非京産 皆措備於嶺南巨刹 貢人輩僧人 每年相約……⁽⁶⁶⁾

이처럼 紙商貢人들이 納品하는 紙物을 嶺南을 비롯한 三南의 諸寺院에서 購入했기 때문에 遠路輸送의 弊를 덜기 위해서 그들에게 支給하는 貢價(紙價)를 京中(宣惠廳)에서 支給하는 代身에 各紙産邑의 上納大同米로서 直給토록 하는 이른바 貢價外受制를 採用하였던 것이다.

(戶判) 金始炯曰 向來筵中 貢價外受一款 格別嚴禁事下命矣 至於方物所用紙價 與他貢物有異 遠路輸送極難 大爲貢人之弊 故應下貢價 自前以紙産邑 上納大同中劃給 而貢人每遠輸之弊 惠廳有馭價會錄之事 公私俱便 行之已久 此則與閑雜人等外 受牟利有異

(65) 承政院日記 肅宗 27年 12月 20日

(66) 承政院日記 英祖 23年 4月 14日

似當依前爲之矣⁽⁶⁷⁾

위와같이 英祖 23년에 貢價外受를 禁止하는 措置를 取할 때 이 紙契貢人에 한해서는 從前과 같이 外受를 허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僧徒들에 대한 營·邑의 紙役誅求가 滋甚해짐에 따라 寺刹이 衰殘해지고 紙物生産이 減縮됨에 따라 紙物購入이 어려워지고 紙價가 騰貴하는 現象이 일어나 貢인들이 質納에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

(a) 三南方物紙契貢人所懷中 方物白綿紙 始而楮責僧殘 未收如山 終而營邑紙役滋甚 害歸貢人 幾至廢貢之境 營邑紙役除減之意 昨年筵稟行會 延豐之覺淵寺 則尙不除減 營邑誅求 比前尤甚……⁽⁶⁸⁾

(b) 三南大小好紙契貢人等 以爲挽近紙價翔貴 每年落本 殆近萬兩……⁽⁶⁹⁾

④ 修理契

修理契는 年例의으로 실시하는 關內修理에 소요되는 紙類 油芫 席子 등을 備納하는 貢契이다. 關內修理事를 管掌하는 戶曹에서 매년 과대한 費用(貢價)을 청구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規制하기 위하여 英祖 35년에 그 上限額을 6,600石으로 定限하고, 이 가운데 5,000石은 宣惠廳(三南分擔)에서 修理契에 給給하고 1,600石은 每年 戶曹에 移給하여 大內修理費에 사용케 하고 그 이상의 經費가 所要될 때는 戶曹別質條에서 支出토록 하였다.

安東 永川 등 8邑에서 進上席子を 製造하는 席匠에 대하여 復戶를 지급했음을 前項에서 言及한 바 있다. 大同法 設始 후에도 이 8邑의 席子を 土貢으로 指定하고 大同儲置米 2,180石, 大同布 27同을 計給하고 또 席匠에 復戶를 支給하여 每年 1,300餘枚의 席子を 製造·上納토록 하였다. 그런데 시대의 推移에 따라 上納에 즈음하여 官員들에 의한 點退와 規外情債의 濫徵이 恣行될 뿐 아니라 別卜定(特別賦課)이 敢行되어 당초 1,000餘名에 달했던 席匠들이 무거운 負擔에 견디지 못하여 大多數가 逃散하고 그 결과 隣族徵의 弊端이 일어나고 席子の 品質이 저하되어 갔다.⁽⁷⁰⁾ 席子の 土貢에 따른 이러한 폐단을 克

(67) 承政院日記 英祖 23年 4月 14日

(68) 承政院日記 正祖14年 2月15日 右承旨 申耆 啓

(69) 高宗實錄 卷18, 18年 4月 10日 議政府 啓

(70) 道內 安東 順興 禮泉 榮州 永川 豐基 義城 龍宮等八邑 每年二八月令 長興庫 尙衣院所納席子爲一千三百餘張 而京司上納之際 點退之弊 情債之徵 逐歲倍加 八邑席匠鬻土賣舍 蕩敗流離 十居八九矣 各邑席匠 見今余存 大邑無過七八名 小邑未滿五六名 每當進上之節 侵及族隣 害及姻查 甚至於婚講路絕 此又感傷和氣之一端 大抵元定席價米 爲二千一百八十石 布爲二十七同 復戶爲四百九十三結 則當初磨鍊若是優厚 而法久弊生 科外橫費 轉輾刁蹬 乃至於莫可救革之境 今若以每年應給米布及復戶 移作京貢 或付席子契 或付員役如尙房例 使之受價進排 則在都民爲資生之道 在席戶爲祛瘼之端 (正祖實錄 卷12, 5年 12月 丙申 慶尙道觀察使 趙時俊 疏)

이 밖에 承政院日記 正祖 5年 12月28日 東萊府使 趙英鎮 疏 參照.

服하기 위하여 純祖 8년에 慶尙道監司의 建議에 따라 8군의 土貢席子를 京貢으로 移作하는 동시에 經營難에 빠져있는 修理契를 支援하는 뜻에서 貢價를 該契에 支給하여 質納케 하였다.

嘉慶辛未 因修理契軫救之方 嶺南外貢席子 依道報民願 移作京貢 付之修理契 兼當舉行 則在八邑席民 既祛切苦之瘼 在修理契貢人 優爲沾溉之資⁽⁷¹⁾

⑤ 公事紙契

이것은 宣惠廳에서 사용하는 公用紙類의 質納을 담당하는 貢契이며 肅宗 37년에 始定된 것이다. 嶺南廳에서 該契에 支給한 貢價米는 172石이고 그들이 質納한 紙類의 種目은 壯紙 厚白紙 常白紙이며 貢價支給單價는 初期에는 壯紙는 每卷當 價米 6斗, 厚白紙는 4斗, 常白紙는 2斗 였던 것이 純祖時에 8斗, 6斗, 3斗로 각각 인상되었다.

宮納

各殿·宮需用品은 原則적으로 宣惠廳에서 供上各司에 貢價를 支給하고各司에서 貢·契人에 給價·備納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의 進上物에 限해서는 貢價를 宣惠廳에서 各殿·宮으로 直給하였다. 즉 各道에서 上納하던 進上臘肉(生豬 生雉 生鹿)과 12月 朔膳 生豬에 대한 外貢 封進制를 革罷하고 그 代價를 宣惠廳에서 各殿·宮에 直納토록 하였다. 이러한 官納制에 따라 嶺南廳에서 大殿에 上記物資에 대한 價米 41石 9斗, 中宮殿과 世子宮에 19石 7斗 6升씩을 각각 直納하였다. 그런데 官納에는 元貢價外에 石마다 加升米 3升, 添補米 1升 5合, 및 馱價(運搬費) 1錢 5分씩을 加給하는 것이었다. 大同法設始初에 여러가지 進上物種에 걸쳐서 이 官納制를 채용하였으나 內侍들에 의한 廉價勸買를 비롯한 弊端(宮弊)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폐지했던 것인데 뒤에 와서 두세가지의 品目에 官納制를 실시하였다.

V. 留置米

1. 營·官需

慶尙道 留置米에서 劃給한 營·官需의 規模와 내용에 관하여 살펴 본다. 英祖 45年 本道 大同收租額 151,498石가운데 本官所用 즉 營·官需는 19.2%에 해당하는 29,155石이고 同年度에 會減한 本道留置米(船價 8,000餘石 제외) 521,199石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⁷²⁾ 그리고 純祖 24년에 있어서 大同 收租額 149,355石가운데 劃給한 營·官需額은

(71) 嶺南廳事例 上下條

(72) 文獻備考 田賦考 13

29,346石으로 19.4%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本道 營·官需의 規模는 약 29,000石으로 收租額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監·兵·水營의 營屬俸祿 油·淸·紙·筆·墨·藥材價·官衙修理 使客支供費 등을 포함하는 廣義의 營需에 관하여 살펴 본다.

監營에 대하여 大同法 設始時에 1,300石의 營需米를 劃給하였는데 康熙 辛酉年에 1,020石으로 減額하였다.

大同設始初 則需米七百石 紙地駕輻毛物等價六百石 合米一千三百石磨鍊矣 康熙辛酉 營需之過濫 自本廳別單量減 以需米一千石 豹皮價米二十石定式⁽⁷³⁾

監營外에 右兵營에 520石, 左兵營에 400石, 統營(右水營兼)에 500石의 營需米를 각각 劃給하고 大邱·慶州·安東·尙州·晉州의 5營將에 각각 營需米 84石씩 計 420石과 이외에 紙筆墨價米 73石 14斗 魚鹽價米 40石 4斗 新迎舖陳價米 9石 4斗 5升과 大邱營將에 특별히 雉鷄價米 12石을 儲置米에서 劃給하고, 또 常平耗殺에서 戰馬 및 軍官騎馬 飼養費를 支給하고 있다.

다음에 官需를 보면 純祖時에 本道 官需米 劃給總額은 18,852石인데, 大同法 設始初에 는 이보다 많았으나⁽⁷⁴⁾, 康熙 辛酉年에 湖南의 예에 따라 減額하였다고 한다.

當初各邑官需 油·淸·紙地·使客支供之磨鍊 稍有過濫 康熙辛酉 自本廳 依湖南例 減數定式⁽⁷⁵⁾

道內 各官을 大·中·小·殘邑으로 4分等하여 官需를 最低 186石 10斗에서 最高 390石에 이르기까지 差等을 두어 劃給하였는데 그 내역은 <表 15>와 같다.

그리고 廣義의 官需에 속하는 使客支供米 1,730石을 各官에 配分하고 있는데 <表 16>에서 보듯이 使客의 來往 頻度에 따라 各官別 劃給量이 달라지고 있다.

<表 15> 各官官需米 劃給額

大邑 : 8官	各 390石
中邑 : 7官	〃 300〃
小邑 : 28官	〃 280〃
殘邑 25官內 南海寺 15官	〃 237〃
聞 慶	〃 246〃
機張 등 11官	〃 186石 10斗

出典 : 嶺南廳事例 外方會減條

(73) 嶺南廳事例 外方會減條

(74) 同 上

(75) 同 上

〈表 16〉 各官使客支供米 劃給額

官 名	劃 給 額	官 名	劃 給 額
尙 州	120石	清 道	45石
大邱·善山	各 95〃	漆 谷	35〃
密 陽	75〃	豐基·咸昌	各 30〃
安 東	60〃	金海동 12官	〃 25〃
慶州·星州	各 50〃	昌原동 9官	〃 20〃
晋州·開慶		東萊동 12官	〃 15〃
		寧海동 24官	〃 10〃

出典：嶺南廳事例 外方會減條

2. 儲置米

英祖 45년에 있어 本道 儲置米의 總量은 23,040石으로 大同收租額 151,498石의 15%⁽⁷⁶⁾ 이고, 純祖 24년에는 7,468石으로 동년 收租額 149,356石의 4.7%에 불과하며, 儲置米의 劃給額과 그 比重의 變動幅이 크다.

倭館所在地인 本道에는 年間 約 1萬石에 달하는 接倭費를 儲置米에서 支給해야 하기 때문에 慢性的 赤字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萊府接倭之需 逐年恒式爲萬餘石 若值別差倭 往來之時 則別例用下 因無定限矣 儲置已盡傾竭 則不得已以還米之移錄者 還租之換作者 追後劃送⁽⁷⁷⁾

正祖 5年 慶尙道 觀察使 趙時俊은 本道 儲置의 收支狀況에 관하여 이래와 같이 論하고 있다.

本道儲置米 一年應用多爲六七萬石 少不下四五萬石 而近年以來 京司經用 每患不足 收租後劃給 或爲三萬餘石 或爲二萬四五千石 各項需用 無以支繼 以軍作常賑米 請報移錄⁽⁷⁸⁾

本道 儲置米의 需要額이 4萬石 내지 7萬石에 달하는데 그 劃給量은 2萬4,5千石 내지 3萬餘石밖에 안되어 軍資穀 常賑穀 등을 移給받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7,400餘石을 劃給한 純祖 24年の 경우는 論할 필요도 없거니와 23,000餘石을 劃給한 英祖 45년에 있어서도 儲置米 需要額이 32,718石이므로⁽⁷⁹⁾ 8,674石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儲置米의 이러한 慢性的 부족은 後述하는 바와같이 本道 農民에게 막심한 피해를 안겨준 근원이 되었다.

本道 儲置米를 用目別로 分類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76) 文獻備考 田賦考 13

(77) 正祖實錄 卷 12, 5年 12月 丙申

(78) 同 上

(79) 文獻備考 田賦考 13

• 進 上

① 薦新 ② 朔膳 ③ 方物・物膳 ④ 藥材進上 ⑤ 監司到界進上

- 各邑祭享費
- 各邑土貢措備價
- 使臣求請物價
- 壯士支放米
- 夫刷馬價

① 新舊守令 迎送刷馬價 ② 因公上京守令各差使員 給騎馬價 ③ 進上上納物馱價 ④ 東萊上送倭進上物 馱價 ⑤ 各邑夫刷馬價

- 水陸軍 習操時 犒餉・大箭・黃燭價

① 進上(外貢)

儲置米로서 措備・上納하는 本道の 外貢進上을 알기 쉽게 作表한 것이 <表 16>이다.

<表 16>

進上內譯(外貢)

	價 米 (괄호內는 封裹價米)	封 進 官	重 要 物 種
薦 新	43石3斗 (18石13斗)	監營(都會官)	生竹筒 등
朔 膳	338石 (127石10斗)	監營・左水營	生熟半乾餛 등
三名日 方物物膳	950石6斗 (366石9斗)	監營・左右兵營 左水營・統營	甲冑・皮物移作京貢 只有物膳
端午方物 物膳	506石12斗 (123石2斗)	同 上	扇子・竹・紙地
陳賀方物 物膳	163石9斗 (63石5斗)	監・兵・水營 4州牧(晉・慶・尙・星州) 兩都護府(安東・昌原) 堂上2品在任郡縣	
監司到界 進上	146石 (115石4斗) ※ 隨時增減	監 室	
藥材進上	697石11斗	監 營 統 營	人蔘・麝香 清蜜 鹿茸 青大竹

出典：嶺南廳事例，外方會減條

本道の 監・兵・水營 및 4牧官에서 計給된 儲置米로서 措備上納하는 外貢進上은 宗廟薦新・朔膳・三名日 및 端五方物・物膳・陳賀物膳・到界進上・藥材進上 등이 있으며 그 價米와 封裹(包裝)費는 表의 2欄에 표시한 것과 같고 主要物種은 4欄에 記載한 것과 같다. 大同法아래 外貢進上은 計給된 儲置米로서 措備・上納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 많은 民弊를 가져온 根源이 되었는데 여기서 2, 3의 事例를 들어본다.

(a) 泗川縣監 睦胤善 虛民肥己之狀……月令進上 例以大同米 買賈封進 胤善不給價米 白

地徵捧 及其浦民逃散之後⁽⁸⁰⁾

(b) 左兵營封進生鰓 下輩無於前之誅求 爲小民難支之端……而無論山郡海邑 進上情債費 比前加徵者⁽⁸¹⁾

(c) 洪義運 以備邊司言啓曰 即見慶尙右道暗行御史 鄭晚錫別軍……其一 沿邑進上封進 時 營屬之情債極夥 戊午減數酌定 而纔過一年 又復濫徵……其一 貿易之規 邑邑有之 或使書員質納 或使倉色質納 幻弄田結 偷竊官穀 名雖吏質 實是民斂 而爲官長者 恬然 取用 因此推之 京司及各營情債 亦不下於貿易之爲害田結也⁽⁸²⁾

史料 (a)는 泗川縣監이 月令進上魚物을 措備함에 있어서 그 代價를 支拂하지 않아 收奪에 견디지 못한 漁民들이 逃散하고 있다는 것이고, (b)는 慶尙左兵營에서 進上生鰓을 各邑으로 부터 聚集할 때 營屬들에 의한 情債를 비롯한 科外誅求가 極甚하다고 하는 것이고 (c)는 各邑에서 監·兵·水營등에 京納進上物을 바칠 때 營屬들에 의한 情債誅求가 滋甚하며 또 各邑에서 書員 倉色등의 官屬을 시켜 進上物을 質買(購入)하는 規定을 두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 儲置米에 購買費로서 計給된 質買官穀을 橫取私食하고 奸計를 꾸며 田結에 徵斂하고 있다는 것이다. 外貢上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民弊는 比前 慶尙道에 국한된 現象이 아니고 全國的 規模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王朝末期에 가까워 갈수록 더욱 滋甚해지고 있다.

② 各邑祭享費

各邑에서 舉行하는 各種 地方祭享에 所要되는 脯(乾肉) 幣帛 紙物 燭 筆 墨 魚 鹽 등의 措備價로 1,464石 11斗 8升을 計給하고 있다.⁽⁸³⁾ 各邑祭享에 使用하는 魚鹽은 本道에서 收稅하는 漁鹽稅를 還付하여 充給토록 하였으나, 均役法 실시 후 이를 儲置米에 支給토록 하였다.

③ 各邑土貢

監·兵·水營등에서 封進하는 外貢이외에 生産地에서 直納하는 白土 席子 箭竹 등의 土貢이 있다. 席子和 箭竹에 관해서는 既述한 바 있으므로 설명을 省略하고 白土에 관하여 살펴보면 晉州 昆陽 2邑에 白土 仇土 水乙土의 掘取役價와 輸京船價條로 米 368石 8斗를 劃給하고 있다. 白土등은 厨院用 사기그릇을 燔造하는데 사용되는 材料이다. 처음에는 晉州에서 200石 昆陽에서 50石을 각각 採土·上納하였으나 民弊가 막심했기 때문에 뒤에 晉

(80)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10月 25日

(81)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12月 22日

(82) 承政院日記 純祖 2年 6月 23日

(83) 嶺南廳事例 外方會減條

州에는 80石으로 減額하였다.

④ 夫刷馬價

本道の 夫刷馬價에 있어서 特記할 事項은 倭使들이 가져오는 進獻物을 輸京上納하기 위하여 東萊府에서 尙州까지의 水路輸送費를 儲置米에서 計給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儲置米의 使用에 관한 餘他の 項目에 대해서는 他道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本道 儲置米의 特殊用目인 倭供에 관하여 項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倭 供

倭使接待를 위한 倭供關係에 사용한 本道 儲置米를 嶺南廳事例 倭供條에 의거하여 項目別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求請雜物價

倭館所在地인 釜山浦에 留泊하는 年例入送使 또는 別差倭의 送使船에 대하여 帆竹 長板木 其他需用物의 調達費條로 價米 1,489石 1斗를 本道 儲置米로서 支給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② 日供・宴享・求請雜物價

入送倭使 一行에 대하여 諸般需用物을 提供하는 日供과 設宴所要物資 및 求請雜物은 처음에는 本道各邑에 分定하여 이를 東萊府에서 聚集하여 倭館에 入給하였으나 點退와 現物輸送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덜기 위하여 康熙乙亥年부터 그 費用을 各邑 儲置米에서 東萊府에 劃給하고 거기서 措備入給토록 하였는데 그 價米가 1,744石 13斗이다.

③ 入送使 館守倭 宴享魚物價

倭客接待를 위하여 釜山에서 設行하는 宴享에 소요되는 魚物價 298石 1斗를 各邑 儲置米로서 東萊府에 劃給하고 있다. 당초에는 魚產各邑에서 魚物을 東萊府에 輸納하였으나 該府 官屬들에 의한 侵奪의 弊害가 컸으므로 乾隆戊辰年에 그 價米를 東萊府에 劃給하고 거기서 魚物을 購買・使用토록 하였다.

④ 江海邑 給倭魚物價

入送使客과 官守倭에 提供하는 魚物 및 糶(미역) 鹽價條로 米 961石 12斗를 各邑 儲置米로서 支給하고 있다. 이 魚物은 價米를 入給하지 않고 本色魚物을 入給토록 하고 있는데 그 入給을 東萊府에서 一括해서 擔當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⑤ 公作米

公買員의 代價로 支給하는 公木 1,166同 13疋가운데 公木 400同을 還作米하여 公木 1疋에 米 12斗씩 折價・徵稅함에 따라 農民이 과중한 稅外負擔을 지게되는 폐해를 입었기 때

문에 위를 緩和하기 위해서 前後 두차례에 걸쳐서 4斗를 減額하고 이 減額에서 招來되는 公作米의 不足額 2斗(每疋當 2斗)는 田貢條의 位米·太主로서 補充하고 나머지 2斗의 不足部分은 慶尙道 大同米로서 補充토록 하였음을 前項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러한 公作米 減額代條로 支給한 大同米는 2,666石 10斗이다.

⑥ 其 他

이밖에 倭使接待을 위하여 中央에서 派遣하는 接慰官 支待費條로 接賓廳에 米 50石과 巨濟玉浦에 留待하는 倭學小通詞 朔料米 30石과 各邑에서 東萊府로 輸納하는 前記한 各種 倭供關係 所需米의 下納船價를 各 儲置米에 計上하고 있다.

⑦ 倭供의 弊害

이상과 같은 慶尙道 儲置米에서 負擔하는 倭供關係 總額은 公作米를 合하여 7,240石에 달한다. 그런데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正祖 5年에 慶尙道 觀察使 趙時俊은 本道 儲置米에서 負擔하는 經常接倭費가 1萬餘石이고 그외에 別差倭가 渡來할 때는 1萬石을 훨씬 上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檢討한 嶺南廳事例의 倭供條에는 倭館修理費 別差倭 接倭費등이 計上되지 않았고 또 누락된 項目이 있을 것이므로 本道 儲置米에서 負擔한 倭供關係 歲出額이 約 1萬石에 달한 것으로 믿어진다.

本道 儲置米에서 支給한 約 1萬石에 달하는 倭供負擔과 沿海邑의 公木出給으로 말미암아 慶尙道民이 입은 弊害는 莫重한 것이었다. 公木의 點退에 의한 弊害와 農民에게 稅外負擔을 強要하는 부당하게 策定한 換價率에 의한 田稅米의 作木(公作木)과 公木의 還作米(公作米)로서 입게 된 農民의 弊害에 관해서는 前項에서 論究한 바와 같다. 그외에 公作米의 釜倉輸納에 있어서도 많은 폐단이 일어났다. 敷言하면 公作米는 倭人이 가져오는 公買品에 대한 代價로 支拂하는 것이다. 그런데 約條에 合意한 價額의 公買品이 數年동안 搬入되지 않을 때 慶尙道 沿海各官에서 輸納하는 公作米를 收貯하는 東萊府의 釜倉에는 舊穀이 累積되니 이를 改色해야 할 뿐 아니라 各官에서 輸納하는 公作米를 釜倉에 入倉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守令에 의한 公作米의 不正貸出과 官屬에 의한 不正濫費의 現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다.⁽⁸⁴⁾

다음으로 指摘해 둘 것은 倭館에 가까이 있는 豆毛浦와 開雪浦의 浦民들이 苛酷한 倭館 差役으로 막중한 困痛과 弊害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倭館에 붙어있는 兩浦는 業務量이 많았고 浦民들은 水軍에 立役하는 外에 陸軍에 軍布를 바치는 一身疊役을 負擔할 뿐 아니라

(84) (承政院日記 正祖 7年 8月 3日) 「釜倉米事……在前倭供米 每年畢入給 冬末則掃清倉庫 以待明年之新捧矣 數十年來 倭獻稽滯 故不得盡數入給 以致累年條之積儲 而庫舍至不能容 則爲守令者 遂有立本之舉 而下吏從而幻弄 其弊至於此矣 今當廣其庫舍 而嚴其守令犯法之禁 則可以救弊」

여러 가지의 倭館差役의 무거운 負擔을 지고 있었음을 純祖 8年 前慶尙監司의 아래의 馳啓에서 알 수 있다.

「(前略) 則以爲豆毛 開雪兩津 處倭館三里五里之近 彼人動靜 晝夜伺察 而弊孔瘡 一人既應水軍之役 又納陸軍之布 其外倭館差役等事 凡爲三十餘條 各爲九百二十兩零 身布許頃之恩 遍及於義州 統營及左水營東萊 而獨不及於倭館切近之兩浦 豈無輕重之倒置乎 疊役一款 宜先矯革……(85)

豆毛 開雪의 兩浦民은 水軍과 陸軍에 二重立役할 뿐 아니라 倭館差役을 비롯한 30餘種에 달하는 負擔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慶尙道儲置米에서 年間 약 1萬石에 달하는 接倭費를 支出하였고 그것이 主因이 되어 儲置의 慢性的 不足(赤字)을 가져왔고 이 儲置赤字를 軍資·賑恤用 還穀을 劃給하여 補填토록 하였다. 그런데 還米와 大同米는 品質이 같지않고 前者는 後者에 比하여 白度가 낮은 下品米이므로 還穀의 儲置移作(轉用)에는 莫甚한 폐단이 일어났다. 正祖 5年 慶尙道 觀察使 趙時俊은 還穀의 儲置轉用과 관련한 倭供의 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儲米還米 精麤不同 供倭之米 尤取潔白 斗斛差異 量法高準 出給民間 使之改色精春 輸納船所 計其補縮之費 固已倍從 而每值方春 勢窮之時 當夏農劇之節 粒粒辛苦 男負女載 沿江一帶 愁怨載路(86)

要旨는 倭供에 사용할 還米를 每年 春窮 農繁期에 民間에 分給하여 새로 甞어(改春)서 바치게 하므로 改春輸納에 倍에 달하는 補縮費(米)를 負擔해야 하며 또 그 勞苦가 莫重한 것이므로 沿江一帶에 愁怨이 充溢하고 있다는 것이다.

還米의 儲置轉用에서 야기되는 弊害는 비단 倭供納付에만 局限된 現象이 아니고 各邑에 의한 船價米·管需米의 支給과 甘同倉(蔚山 機張 梁山邑 세 곳의 大同收貯倉)의 納付에도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관하여 正祖 15年 4月 3日 前慶尙監司 李祖源은 請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蓋曾前 則惠廳之請得軍作米 南倉米 除留米等穀物 只劃給於各邑儲中中 四等用下不足之代矣 近年以來 則直爲添入於收租案 與新結米通融磨鍊 故當年稅米 盡歸上納儲置 則皆是還米中移作者 沿海邑之上納船價米 沿江邑之東萊納 甘同納及管需米 例以儲置中上下 而還米結米 精麤懸殊 不可以此用下於上項諸般名色 故不得已出給民間 使之改

(85) 承政院日記 純祖 8年 正月 4日

(86) 正祖實錄 卷12, 5年 12月 丙申

春取精 一石之米 僅爲七八斗 并與升色落而徵捧 結民地白地補縮 至於七八斗矣 昨冬收租中 各樣還米之移作儲置 合爲六千三百五石 而山郡之自其邑用下者 姑勿論 至於沿邑 則其所爲弊 如右所陳 試以今年言之 咸安 固城 丹城 尙州 善山 星州 等 六邑 以其還米之過數添劃 受弊最甚 民情抑鬱矣⁽⁸⁷⁾

여기서 우리는 從前에는 儲置로 移作한 還米를 各邑需用에만 計上·支出토록 하다가 移作方法을 바꾸어 各邑의 需用뿐 아니라 倭供·船價·營需·甘同倉納 등에도 還米를 大同米와 함께 計上하였고 이에 따라 還米改春의 폐해가 本格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還米 1石을 改春하면 半石에 해당하는 약 7, 8斗가 줄게 되며 이를 메꾸기 위해서 每石當 補縮米 7, 8斗를 農民에게 強徵하니 農民은 이 規外負擔을 질 뿐 아니라 改春과 輸送의 勞苦를 負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肅宗 3년에 5번째로 慶尙道에 成立·施行을 보게 된 大同法은 肅宗 9년에 課稅公平을 實現하는 措置의 一環으로 他道와 같이 賦課額을 每結 12斗로 減定하였고 山郡에는 大同米 7斗에 木 1疋씩 折價하여 木綿을 稅物로 삼았으며 本道의 大同 收租額은 약 15萬石이었다. 그리고 8萬餘石에 달하는 對日外交關係費 가운데 公買價 4萬餘石의 財源을 本道田稅에서 捻出하였는데 이를 위한 田稅의 作木과 公木의 還作操作에 있어서 破格的으로 높은 折價率을 策定함으로써 農民의 負擔을 加重케 하였다. 本道 大同稅의 用途에 있어서 특기할 점은 慶尙道 大同儲置米에서 약 1萬石에 달하는 接倭費의 負擔은 儲置米의 부족과 還米의 儲置轉用을 초래하였고 還米의 轉用에 따른 改春은 農民의 負擔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87)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4月 3日